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일시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창비서교빌딩(망원역 1번 출구)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Gender Violence Research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Gender Violence Counselors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목차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3	발제 1	'생존'의 말하기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의 의미와 분석 1년간 전국 4개 성폭력상담소의 '미투',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사례를 중심으로
83	발제 2	성폭력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간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과정
131	토론 1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134	토론 2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38	토론 3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정
143	토론 4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44	토론 5	권혜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발제 1

'생존'의 말하기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의 의미와 분석

1년간 전국 4개 성폭력상담소의 '미투',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사례를 중심으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 ‘생존’의 말하기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의 의미와 분석

1년간 전국 4개 성폭력상담소의 ‘미투’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사례를 중심으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1. 서론¹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8년 3월, 한국정부에 대한 UN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최종 권고안에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7개 부분이 제시되었다(CEDAW/C/KOR/CO/8).² 특히, 현행 「형법」 제297조 상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 혹은 위협의 수단”을 수반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과 더불어, 단순히 판례가 아닌 법체계 내에서 배우자 강간을 명확하게 범죄화하라는 이전 권고(CEDAW/C/KOR/CO/7, para. 21(e))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22(a)). 이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23(a))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

1 이 연구는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것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연구책임:김보화, 공동연구:허민숙, 김미순, 장주리)의 결과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더불어 본 자료집에 표기된 사례의 문구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금해주시길 바란다. 연구의 맥락이 삭제된 채 사례만 인용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경험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02-338-2829, research@sisters.or.kr)

2 여기에는 1. 형법 제297조 개정(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 판단), 2.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고 화해와 중재 사용 금지하고 형사처벌 보장하기,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금지, 4.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제재 및 예방조치 강화, 5.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제 확립, 6. 학교·대학·군대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보고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엄격한 비밀보장, 7. 탈북여성들에게 적절한 상담 등을 위해 탈북여성센터에 재원 제 공이 있다.

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관례를 금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2012년 전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지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주요 사건들을 통하여 성폭력범죄 처벌강화와 피해자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12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었으며,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적용배제 또는 연장,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관 제도 실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등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비동의 성적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의 문제가 부상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응책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등을 주제로 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러나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위시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SNS에서의 폭로들, 뒤이어 2018년 초 본격화된 성폭력피해자들의 ‘미투(#MeToo) 운동(이하 ‘미투운동’)'은 법조계, 정치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그간 숨겨져 왔던 성폭력 피해경험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간 처벌강화 중심의 정책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에서 알려진 ‘미투’의 사례들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았는데 직장 내에서나 친족 간 권력 관계로 인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소멸시효가 지났거나 폭행과 협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 등 기존의 성폭력 정책 대응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하였거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처벌이 어렵고 처벌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backlash)’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2차 피해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방식에 의해, SNS의 포스팅이나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등에 의해, 또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역고소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를 함구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의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더

욱 적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지원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하여 변화의 요구에 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기록하는 상담일지는 피해자의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한국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역사적 사료일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상담일지 분석은 피해자들이 성폭력피해 이후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떤 지원을 기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상담일지는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심리적 상담 혹은 법적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장다혜, 2012). 특히 성폭력상담소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도 의뢰되기 때문에 신고·고소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에서의 성폭력,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모호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인 외 대리인의 상담도 포함되므로 성폭력으로 파생되는 주변인들의 호소와 요구사항도 드러난다. 더불어 성폭력 상담일지는 사례에 따라 초기 상담이 지속 상담, 면접 상담, 심리·의료·법률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련의 지원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 통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내용이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지원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2차 피해 경험 등이 기록된 자료이므로,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비교적 최근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질적 자료인, 성폭력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미투’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것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구조와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중 4개소를 선별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의 상담일지 전수를 살펴보고, 대략 15,000여장의 상담일지 중에 구체적으로는 성인피해로서 ‘미투운동’을 언급한 상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특징과 발생 조건, 장애인성폭력, 역고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미투’ 언급, 폭행 협박없는 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역고소를 세부주제로 삼은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상담일지에서 이들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투’를 언급하는 성폭력은 그간에 ‘해결’되지 못했던 성폭력들이 신고·고소·폭로되는 방식이 많은데, 그간에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폭행·협박이 없었거나 가해자와의 권력관

계가 커서 폭행·협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럴 경우 가해자들은 현행 최협의설에 근거한 강간죄의 판단 기준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역고소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쉽게 역고소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 '미투'를 언급하며 상담을 요청한 상담들은 고소 시에는 무고에 대한 우려를, 공론화를 고민할 때는 명예훼손을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지원자들은 상담 시 역고소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말하기를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투'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어떠한 경로와 동기,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의 취약한 환경을 활용하는지, 성폭력역고소는 어떤 의도로 실행되고, 어떤 조건에서 현실화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키워드별 일지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성폭력 상담일지 주요 입력 항목

대분류	소분류
기본정보	최초상담번호, 상담일련번호, 차수, 상담방법(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기타), 상담 의뢰인, 피해자성별, 피해자나이, 가해자성별, 가해자나이, 피/가해자 관계, 피해유형, 피해장소, 지속피해횟수, 지속피해기간, 다른피해자유무, 피해시상태(술/약물/수면), 피해자특성(장애여부, 이전피해, 국적 등)
대응과 과정	2차피해(경찰/검찰/법원/언론/의료/피해자가족/가해자가족/기타), 상담전조치및대응(의료기관/법적대응/주변인도움요청/사과요구/상담소인지경로 등), 법적절차(고소유형, 진행단계, 결과), 피해자요구, 상담원지원내용, 사건개요일지요약
역고소	유형(염려, 협박, 무고, 명예훼손, 위증, 민사, 제3자고소, 기타 등), 신고/고소한 기관/사람, 피의자 인지시점, 법적절차(진행단계, 결과), 사건개요일지요약
미투	동기부여매체, 미투인지방법(직접언급, 정황상), 그동안 망설인이유, 사건개요일지요약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가해자행위형태(심리적 협박, 유인, 경제적 해고, 보상 등 저항하지 못한 이유), 피해확신여부, 성폭력 이후상황, 사건개요일지요약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장애세부유형/장애등급, 가해자 장애유무/세부유형/장애등급,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과정, 합의요구 여부와 요구를 시도한 기관/사람
기타	일지상 오류 등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상담소별, 세부주제별 분석대상이 되는 상담일지의 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상담소별 상담분석대상 사례 수

구분	상담건수(건) ³	상담횟수(회)
전체	638	3,484
A 상담소	11	450
B 상담소	13	502
C 상담소	126	1,602
D 상담소	488	930

〈표 3〉 세부주제별 전체 상담분석대상 사례 수(중복)

구분	상담건수(N=638)	백분율	단위: 건
'미투' 언급	168	26.3%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516	80.9%	
역고소	109	17.1%	
장애인성폭력	13	2.0%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상담일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상담소는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4개소로서 대도시에 위치하면서 주변 소도시 상담소들과의 소통과 연계가 원활하고, 사건 지원경험이 풍부한 상담소들로 선정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 및 분류 항목, 작성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에서 선정된 D상담소의 2018년 4월 상담일지를 사전 열람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수가 많고, 현재의 성폭력 상담 현황을 알 수 있으며, 법·제도적 제언이 시급한 '미투' 관련 상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의 3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는 성인으로 한정하였고,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사건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소인 B상담소의 일지로 한정하였다.

3 이 글에서 상담건수란, 상담한 사례의 수를 뜻하고, 상담횟수란 누적된 모든 상담의 수를 말한다. 한 건의 상담 건수는 횟수로는 1회부터 100회 이상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분석시기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의 상담일지이며, 해당시기 이전부터 상담 및 사건지원을 받고 있던 지속사례들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담일지의 수와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 <표 4>에서 상담건수와 횟수는 모든 상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미투’ 관련 상담은 2018년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상담일지로 한정하였다.

<표 4> 기관별 상담일지 분석대상 사례 수와 현황

구분	총 분석 사례건수(건)	총 분석 사례횟수(회)	지역/분야	지원활동기간(년)
A	11	450	전라	19
B	13	502	서울/장애	17
C	126	1,602	경상	26
D	488	930	서울	27
합계	638	3,484		

그러나 각 상담소별 사례건수와 횟수에는 적지 않은 격차가 있는데, 이는 상담소마다 도시의 규모, 주요지원방법과 일지기록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상담소는 전체 사례건수가 많지 않지만, 1회성 상담이 거의 없고, 지속지원 사건이 대부분이라 건수에 비해 횟수가 많은 편이다. B상담소의 경우도 그러한데, 특히 장애인성폭력 상담의 경우 1회성의 상담일지로는 상담 및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속 상담으로 관리 중인 13건을 선별하였다. 반면 C와 D 상담소의 경우 1회성 상담이 많은 편인데, C상담소가 사례건수에 비해 횟수가 많은 이유는 일지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여 짧은 내용의 상담도 한 회 상담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D상담소의 경우 사례건수가 488건인데 반해 사례횟수가 930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속지원사례보다 1회성 상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소별 건수와 횟수의 차이는 일지작성 방법과 1회성 상담, 지속상담의 양 차이로 보편될 것이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상담일지에 접근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모든 상담소는 상담일지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상담일지는 내담자의 신상과 사건지원의 구체적인 과정이 모두 기입된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담운동의 원칙과 내담자 보호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게는 30여년간 축적된 상담소의 상담일지들은 개인에 대한 정보 기록지의 의미를 넘어 연구와 운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해당기관 담당자들과 여러차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협력기관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주관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축적된 활동과 신뢰, 해당 연구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은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해당기관들의 내

부회의를 거친 후 ‘자료이용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상담일지를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II.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1. 2018년, 한국 ‘미투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1) 한국 ‘미투운동’의 배경과 정의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 일명 ‘speak out’은 지난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고, 한국 여성인권의 향상은 이러한 당사자의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1980~9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과 수사기관에 의한 성폭력, 학교와 대학에서 교사·교수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 친족 성폭력과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 전시 강간 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로 인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에는 성희롱을 최초로 명문화한 「여성발전기본법」이, 1999년에는 성희롱의 정의, 예방과 처리를 규정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수많은 법과 제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한국사회에 편재한 왜곡된 성인식, 통념을 바꾸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대를 걸쳐, ‘미디어 감시과 미디어 정책·교육’, ‘여성인권영화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밤길걷기 달빛 시위’ 등의 문화 운동을 통해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2015년 ‘메갈리아’의 ‘미러링’ 등의 영향으로 성차별을 인식한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성폭력 폭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진보진영 내에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SNS를 통해 가해자를 실명으로 폭로하였고,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OO계 성폭력”과 같은 해시태그 형태로 문학계, 영화계(#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연예계(#STOP 연예계내 성폭력), 게임계, 음악계, 스포츠계, 종교계 등에서의 성폭력피해 말하기가 이어졌다. 2017년에는 김○○ 영화감독이나 남배우에 의한 성폭력, 대기업 내 직장상사에 의한 성폭력들도 폭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 성별권력이 존재하는 한, 성폭력은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각성의 기회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2017년 10월, SNS를 통한 해시태그 형태로 등장한 ‘미투운동’은 지난 몇 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 운동’에 대한 성격과 호명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2018년 초, 빠르게 검찰계, 정치계로 확장되었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정부와 관계부처, 학계

등에서는 ‘미투성폭력’, ‘미투피해자’ 등의 표현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2018년 상반기,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은 ‘미투’와 관련한 많은 상담과 사건을 지원했으나, 언론이나 SNS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가 많았고⁴, 더욱이 언론의 보도는 때때로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일반인’에 의한 피해나 폭로는 드러나기 어려웠다. 따라서 ‘미투운동’이 의도하고자 하는 성폭력의 만연함과 심각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성폭력이 ‘권력’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성별권력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18년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4개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미투운동’이 피해경험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말하기들을 기반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원상(2018)은 “미투운동은 사회 저명인사나 권력자 등에 의해 성범죄를 당하였지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 상처를 품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SNS를 통해 밝힘으로써 사회 저변에 숨어있던 성과 관련된 은밀하고 은폐되었던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운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주승희(2018)는 “남성중심의 주류 성문화의 폭력성 및 차별성을 폭로하고 배격하면서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온전히 인정하여 ‘여성의 노(No)는 예스(Yes)가 아닌 노(No)다’를 선언하며 법이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정숙(2018)은 “성폭행에서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젠더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공개 고발”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담일지를 통해서 본 ‘미투’는 SNS나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형사고소 혹은 제도적 문제제기의 형식을 띄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와의 관계, 현재 상황,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공개적 폭로나 신고·고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언론 등에서 보여지는 ‘미투’를 보고 힘을 얻어 가족과 주변인, 때로는 상담소의 상담원에게 처음으로 ‘말함’으로써 ‘나도 미투하였다/하겠다/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언어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범주와 규범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Lynne Tirrell, 2005). 그런 면에서 ‘미투’는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성폭력이 집단적 경험이며, 여성들의 힘을 복돋우는 말(empowering words)이다(권김현영, 2018). 따라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나도 말한다’(김수아, 2018), ‘나도 고발한다’(한정숙, 2018)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논의들도 있어 왔다.

또한 ‘미투하다’는 표현은 표준어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로서 피해 경험자가 ‘성폭력’, ‘강간’과 같

4 홍주현(2017)은 성폭력 보도에서 가해자 우위의 관계인 경우 보도량이 훨씬 많고, 사생활 보도가 많은 반면,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하는 보도경향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8호 참고.

은 다소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도,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짐작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경험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미 존재했던 의미에 새로운 언어가 명명되고, ‘이름없는 것’에 이름이 붙여질 때(naming), 약자들의 말하기는 더 파급력을 획득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공론화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말하기는 가족, 소속 공간, 온라인 등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투’ 혹은 ‘미투운동’은 “공론화, 신고·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Sexual/Gender)폭력 경험을 말하거나, 기록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유·무형적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론화나 폭로 형태의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는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투성폭력’, ‘미투피해자’와 ‘미투가 아닌 성폭력’, ‘미투가 아닌 피해자’를 분류하거나 ‘미투’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를 ‘미투’ 혹은 ‘미투운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모든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를 ‘미투’라고 인지하고, 호명하고, 대중화된 시기를 잡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일지의 시기는 임의적으로 검찰 내 성폭력이 폭로된 다음 날인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실제 상담소들의 상담을 보면, 1월 30일부터 눈에 띄게 ‘JTBC’, ‘서지현’, ‘뉴스’, ‘미투’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6월경에 이르면 상대적으로 ‘미투’를 언급하는 상담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상담건수는 전국 4개의 성폭력상담소 1년간 상담일지 중 ‘미투성폭력’,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총 약 638건(3,484회) 중에 168건(26.3%)으로 지난 1년의 상담 중 4개월 간의 일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미투’ 관련 상담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상담일지 상에 내담자가 ‘미투’, ‘미투운동’, ‘미투성폭력’, 언론에 나온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 사건, 방송매체 등을 직접 언급했거나, 언론에 공론화된 가해자에 의한 여러 명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거나, 상담원이나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미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로 ‘미투’를 고민하게 된 동기부여매체, 언급방법, 그동안 망설인 이유, 요구사항, 사건의 개요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임의적으로 ‘미투성폭력’, ‘미투’를 언급한 성폭력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왜 그동안 피해를 말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말하기를 가능하게 했는지, 말하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왜 말하지 못했는가

2018년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

건들이 임계치를 넘어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당시 신고·고소를 못했거나, 사과를 받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적어도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등을 의미하며, 그동안 해소되지 못한 사건들이 묵혀져 있다가 ‘미투’라는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 당시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적인 만류/비난과 향후 가해자의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피해경험자의 말하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왜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경험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위력관계

① 아동·친족성폭력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관계가 커서 말하기를 ‘포기’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권력관계’라 함은 나이, 성별, 직급, 장애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민족, 출신국가 등의 차이가 해당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권력관계’는 ‘연령’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투’를 언급한 상담들에서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D상담소 사례의 경우 “32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강간했다. 그 당시 망설인 이유는 어린이들은 성폭력당해도 힘없어 반항 못 한다. <D상담소, 사례347>”라거나, “26년 전 10세 전후에, 삼촌이 강간과 추행을 했다. 어릴 때 무서웠고 어떤 행동인지 몰랐는데, 최근 미투운동보고 남편에게 말했다니 처벌하자고 한다. <D상담소, 사례348>”는 내용들이 있었다. C상담소의 경우 “33년 전, 사촌오빠가 강간했고, 당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말하지 않았다. <C상담소, 사례82>”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아동기에는 성폭력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은 “힘이 없고”, 가해자는 “무서운” 존재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차후에 성폭력임을 알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당시의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작동된다.

또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어머니나 주변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8년 전 10세쯤에 친척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결혼식 등에 계속 만나게 했다. 트라우마 상담받을 정도로 힘든데도 가족들은 오히려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한다. (D상담소, 사례319)

친아빠가 15년쯤 전 경에 성추행을 했다. 엄마한테 말했지만 아빠는 인정하지 않고, 명절에는 아빠를 봐야 한다고 한다. (D상담소, 사례372)

요새 새삼 어린시절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 10년 전 초등학교때부터 고1때까지 친아빠가 심한 성추행을 했다.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은 알면서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D상담소, 사례322)

위의 사례들처럼 일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가해자를 계속 만나도록 요구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가족 간의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건이 “뒤편이 사건이(D상담소, 사례370)”, “이상한 취급(D상담소, 사례318)”을 당했다는 내용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어릴 때 입었던 성폭력과 친족성폭력 피해들은 사건 당시에 말하기도 어렵지만, 이후에라도 말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큰 트라우마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② 직장 내 권력관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7년 총 1,260건(1,955회) 상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83.6%(1,088건)이고, 그 중에 성인의 경우 직장 내 관계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도 상사에 의한 피해가 50.1%(188건)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피해의 경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D상담소의 한 사례는 “지금의 회사로 오게 해 준 직장상사가 권력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고, 여러차례 추행했고, 미투 이후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있다. <D상담소 사례429>”고 말한다. 부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추행은 바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일 뿐 아니라 ‘미투운동’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협박’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된다.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에 따르면, 성희롱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54.9%가 피해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아서(51.6%)’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5). 이는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은 만연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승진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 내에 사건을 문제제기했으나, 직장상사들은 ‘나중에 가해자를 어떻게 볼래, 참아라, 너만 손해다’라고 하며 말리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상담소, 사례76>”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가해자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직장 내 성폭력은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③ 대학·공동체 내 권력관계

대학이나 문화예술계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사제 기간일 때,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저당잡혀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기 쉬우며 말하지 못하게 된다. 예술대 대학교수가 제자를 수년간 추행, 강간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관계를 거부하면 레슨을 대충해주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C상답소, 사례 68>”고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가해자는 자신의 성적 접근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를 무대에 세우지 않겠다고 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D상답소, 사례396>”고 말한다. 더욱이 아래 사례는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무력감과 고통을 잘 보여준다.

가해자는 공연 후 학생들과 함께 2차로 본인의 집에 갔고, 어떤 날은 가해자가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피해를 겪는 걸 보고 있었다. <D상답소, 사례392>

위의 사건은 문화예술계 교수에 의한 피해로서 피해자들은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말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 추후에 말하기를 결심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교수, 선생이라는 지위는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저당잡고 막강하게 ‘군림’하게 된다.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인 총 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영화계 입문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있었다(영화진흥위원회, 2018). 또 VOSTOK 매거진 편집부에서 총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진계 성폭력 설문조사에서 피해를 입은 320명 중 80.9%(259명)가 ‘참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두 실태조사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처럼 특히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은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와 예술학교, 예술대학 등의 폐쇄적인 인맥에 기인하기 때문에(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7) 문제제기가 어렵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은폐되기가 쉽다.

<D상답소, 사례289>에서 피해자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성추행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학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수는 “물증이 없고, 가해자는 유명한 사람이라 자격증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업계’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주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만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특정 분야, 공동체에서 피해를 입은 후 ‘해결을 위한 말하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성공’하는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성별화’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더군다나 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문제제기하려다가 “성폭력사안 발생하면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의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것을 보았는데, 가해자에게 문제제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고 말한다. <D상답소, 사례397>”고 언급했다. 과거 문화예술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작품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지만, 가해자가 단체장인 경우 정부보조금 대상에서 제한되었었다. 이러한 정책은 공동체 내에서 추가 가해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포함하여 작품을 위해 함께 준비한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미치기 때문에 위 <D상답소, 사례397>처럼 오히려 문제제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미투대응을 위한 범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부 차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단체장이 작품에 관여한 정도를 검토해 지원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⁵ 이처럼 ‘미투운동’ 이후 공동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정부의 제도가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기비난 : 성별권력관계

서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Intimate Partner Sexual Violence)은 상호간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당시 폭행·협박이 없고, 저항행위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도 성폭력 통념이 내면화되어 성폭력피해를 입은 후 자기 비난이 강하고, 성폭력 피해경험을 말하기가 어렵다.

한 사례는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라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술을 먹고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관계를 끊지 못한 내 잘못도 있다. <D상답소, 사례388>”고 말하는데, 다른 사례 역시 “친한 동급생이 여러 차례 추행했는데, 처음 피해 때만 저항하고, 두 번째는 저항을 못해서 내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자책감이 든다. 고소했지만 가해자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한다. <C상답소, 사례92>” 이 사례들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관계를 끊지 못한 내 잘못”이라거나, “저항을 못한 내 잘못”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성폭력피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강간 신화(Rape Myth)’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럴 경우 피해경험을 성폭력으로 의미화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폭력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몇 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주변에 보여줬다. 신고를 하려고 동영상을 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남자친구에게는 무서워서 항의하지 못했고, 사건을 안으로 숨기며 지냈다. 미투 보면서 내 피해도 작은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엄마에

5 2018년 3월 8일자, 뉴시스, “[일문일답]정현백 장관 “사회구조적 변화 위해 직접 행동해야”,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8_0000246415&dID=10201&pID=10200

게 죄책감이 들어서 많이 온다. <A상담소, 사례11>

이 사례에서 또래 대학생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특별한 권력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자는 비동의 성적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항의하지 못한다. 또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숙하지 못한 행실을 보였다고 생각할까봐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사회적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적 행동은 다르며,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하도록 하는 피해자 책임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성별’은 여전히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은 ‘미투운동’이 드러내고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최근 ‘미투운동’을 ‘직장 갑질’의 일부로 인식하는 언론들이나, 젠더적 관점과 조직 내 위계적인 권력 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김가은 외, 2018)은 위협해 보인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이나영, 2018).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는 나이가 어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거나, 직장, 학교 등에서 가해자의 권력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각성과 성평등 의식이 필요하다.

(3)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와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이미경, 2012), ‘미투’를 언급한 성폭력피해자들은 사회에 팽배해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말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가 유명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가 꽃뱀으로 취급당하는 걸 보고 망설였다. <D상담소, 사례304>”는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꽃뱀’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피해자의 말하기를 검열하게 만든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6.3%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는데, 이처럼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피해자 책임론은 대중들에게 강하게 존재한다(김수아, 2018).

“안희정 피해자를 보면서 법적 고소 안 하고 싶다. 그 분을 보니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다. <D상담소, 사례417>”고 말하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보도들에서 피해자의 과거 사적인 경험이나 의료기록을 보도하거나, 가해자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거나, 가해자의 부인과 피해자의 갈등 구도로 프레임을 만드는 등의 2차 피해가 남발

했다(김언정, 2018). 이것은 대중과 언론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언론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간접적으로 2차 피해를 학습하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주저하는 계기가 된다.

2018년 상반기 한 배달업체 이벤트에서 ‘저도 당했어요-미트(meat)운동’ 등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거나⁶, ‘여성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펜스롤’이 이슈된 것과 같이, ‘미투운동’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가해자의 대학교에 다녔던 것을 아는 친구들이 너한테는 안 그랬어?, 어떡하냐면서 미투를 농담거리로 쓰기도 한다. 누구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역겹다. <D상담소, 사례450>”는 언급처럼,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를 주변에 알릴 용기를 내기도 전에 ‘미투’가 희화화되는 것을 보면서 공개적인 말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역고소에 대한 염려와 우려는 적극적인 신고·고소·공론화를 막는 원인이 되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묻는 상담이 상당히 많았다.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걱정된다. <D상담소, 사례 373>”라거나 “증거가 없어서 무고죄로 걸리지 않을까. <C상담소, 사례 95>”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공론화나 신고·고소를 하고 싶어도 일부 언론과 주변인의 성폭력 통념과 2차 피해의 우려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말하기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과 동기

피해경험의 직면이 말하기의 욕구로 이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고, 이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금지(주디스 하먼, 2012)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경험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있다는 것, 심지어 숨겨야 할 일일뿐 아니라, 혹여 입밖에 꺼냈을 때 비난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투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결심할 수 있게 한 동기와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피해경험의 직면

성폭력 상담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미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언론과 방송의 보도를 통

6 2018년 3월 15일자, 투데이신문, “‘저도 당했어요 ‘미트’ 운동’…배달의민족 신춘문에, ‘미투’ 희화화 구설”, 출처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6>

7 역고소와 관련한 상담일지 분석은 다음 절을 참고.

해서 피해경험을 직면하게 된 경우이다. “방송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 <D상담소, 사례322>”, “뉴스에서 성추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오래전 일인데 힘들어서 전화했다. <D상담소, 사례329>”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다. 그 외 “그것이 알고 싶다”, “SBS스페셜” 등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경우나 “서지현”, “안희정” 등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미투운동’에 대한 각종 특집 보도들은 잊고 살았던, 혹은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직면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며, 직면된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만난다.

또한 2016년부터 활발해진 성폭력 폭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온라인 상의 각종 카페, 블로그, 직장이나 공동체 내의 게시판 등을 통해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문단 내 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 연예계 내 성폭력’ 등과 같은 해시태그는 각기 다른 높낮이를 가진 목소리를 하나로 묶고, 특정 주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다. 그로 인해 ‘말하기를 추동’하고 ‘불평등을 박제해 전시하는’ 해시태그는 저항의 수단 이 될 수 있다(김효진, 2017).

이런 문화적 조건 속에서 ‘미투’를 언급한 상담사례들 역시 온라인과 SNS에서 폭로를 보고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대 교수 성추행이 왜 기사화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해명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미투글을 올리게 되었다. <D상담소, 사례394>”, “교수의 성추행에 대해 페이스북으로 고발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나도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다. <D상담소, 사례336>”는 사례들처럼 온라인과 SNS는 나의 피해가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신고, 고소와 관계없이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

특히 기존에 성폭력을 비교적 넓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와 달리 소위 강간 등을 ‘중한’ 피해로, 성희롱은 ‘경한’ 피해로 구분해왔던 사회적 인식에서 ‘경중’과 관계없이 성폭력피해 전 반이 아울러서 ‘미투’로 표현되면서 “내 피해가 결코 별거 아닌 피해가 아니라 당당해도 된다는 것 <D상담소, 사례422>”, “미투를 겪으면서 사건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C상담소, 사례88>”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해를 인식하고 떠올리고 직면한다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상담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순간적으로 당한 추행이라 당시 아무 것도 못했다. 미투하고 싶다. <D상담소, 사례411>”며 상담을 의뢰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미투한다’는 의미는 공론화 뿐 아니라 내 피해를 상담원에게 드러내고 위로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반면 ‘미투’를 언급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 “미투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임신, 육아하느라 잊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를 듣고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D상담소, 사례324>”, “미투운동으로 이전의 피해가 더 잊혀지지 않고 더 괴로워서 전화했다. <D상담소, 사례331>”, “30년 전에 강간당했고, 잊고 살려고 했는데 티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힘들다. 상담소에

서 해결해 달라. <D상담소, 사례369>”, “진행 중인 사건이 끝났으나 미투보면서 예전 기억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D상담소, 사례445>” 등의 이야기들은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심리학자 정국은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성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정국, 2012). 그만큼 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이 많으며, 하나의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주변인, 공동체, 사법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투’로 표현되는 2018년 한국의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 운동은 기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가족, 학교, 직장, 공동체, 법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미투운동’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2) 법적 공백과 개인적 해결방안의 모색

‘미투’를 언급한 상담사례들에서 피해자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처벌’에는 법, 제도, 공론화, 폭로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미투’ 언급 사례들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의 피해이거나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등으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들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2009년에 의사가 성추행했다. 미투 이후에 과거사건들도 해결될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생각과 달라서 더 힘들어진 것 같다. <D상담소, 사례452>

현행법상 2013년 6월 이전의 피해는 일부 특수성폭력을 제외하면 고소기간이 1년에 불과했고, 2013년 6월 이후 피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최근의 ‘미투’ 언급 상담들은 짧게는 수년 전부터 가장 길었던 사례는 53년 전 피해까지 있었다. 용기를 내어 연락했으나,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위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더 힘들어지게” 하기도 한다.

반면 ‘미투’를 언급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신고·고소를 시도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다시 침묵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한 사례는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몇 년 지난 일들을 왜, 지금 고소하려고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법률상담 예약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취소했다. 미투보면서 트라우마가 오는데 다시 상담받을 수 있다. <D상담소, 사례302>”고 물었고, “경찰관이 말려서 피해 당시 고소 못했다. <D상담소, 사례320>”는 사례들은 초기 수사기관 대응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때로는 사건 당시에 고소를 했으나 제대로 처벌되지 못한 경우 ‘다시’ 처벌되기를 기대하기도 한

다. “3년 전에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가해자가 강간해서 고소했으나 그때 집에 있던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도 패소했다. 미투운동이 있었으니 재수사되었으면 좋겠다. <C상답소, 사례84>”는 말은 성폭력 사건에서 사법적 해결의 한계와 ‘미투운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법적·제도적 해결에 실패한 피해자들은 ‘미투운동’을 접한 뒤 “2006년 사건이라 고소가 어려우면 다른 문제제기 방법이 있는지<D상답소, 사례336>”를 고민하는데, 이때 이들의 ‘다시 말하기’는 “법적으로 다뤘으나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받았다. 가해자는 대기업의 임원인데 폭로하고 싶다. <D상답소, 사례358>”는 경우처럼 법적 인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는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미투운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생각이다. <D상답소, 사례300>”거나 “교사 생활을 못하게 하고 싶다. <D상답소, 사례357>”, “가해자가 선거에 나오려고 해서 언론화하겠다. <D상답소, 사례399>”는 사례들에서 이들의 동기는 가해자가 현재까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

가해자가 교수라서 논문쓰려고 신고 못했는데 논문도 못쓰고 고통만 커져갔다. 얼마 전 가해자가 나를 불렀는데, 무서웠다. 이제는 살기 위해 문제제기해야겠다. <C상답소, 사례121>

5년 전 선배에게 피해 입었고, 지도교수는 2차 가해를 했다. 논문을 앞두고 있으나 최근 미투운동으로 참가가 괴롭다.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D상답소, 사례339>

위 사례들은 학업을 위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을만큼 참았지만, 이들의 인내는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C상답소, 사례121>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이 ‘말하는’ 동기는 “살기 위해서”이고, ‘말하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폭로’의 방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 차이가 클수록, 피해자가 약자일수록, 피해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수단이며, 폭로 이전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기반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53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폭력을 당했다. 그동안 몇 번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얼굴이 마비됐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게시할 거고 미투운동하겠다. <C상답소, 사례126>”는 사례처럼 이들의 ‘말하기’는 오래 참고, 오래 묵혀둔 만큼 거칠 것이 없고, 단호하다. 이처럼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법적인 공백은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며, 이때의 ‘말하기’는 ‘공공의 목적’일 뿐 아니라 ‘생존’의 다른 이름이다.

4) 말하기의 의미와 효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말하기’는 피해경험을 그것 자체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지지로, 죄책감을 용기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정조’나 ‘순결’을 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침묵을 깨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사회적 통념을 해체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일임을 공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투’를 언급한 상담일지들을 통해 한국의 ‘미투운동’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감과 치유의 연대

수잔 브라이슨(2003)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트라우마를 이야기함으로써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된다는 점은 자율성이라는 것이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폭력의 트라우마가 관계적 자율성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은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보면서 공감의 영역과 연결된다.

25년 전 스님이 수행했다. 처음으로 말한다. 성추행인 줄 몰랐는데 그동안 공부를 했고, 미투운동보면서 공감이 간다. ‘내 잘못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인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 <D상담소, 사례360>

‘미투운동’은 호명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한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폭력임을 학습시켰고, 서지현 검사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힘을 주었다. 이처럼 상담일지에서 ‘미투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피해자들에게 누군가의 ‘미투’와 본인의 ‘미투’가 상호 연결되어,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13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 비슷한 일 접할 때마다 감정이 이입돼서 미투운동을 통해 해소하고 싶다.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니 글을 올리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C상담소, 사례73>

‘미투운동’은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트라우마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피해를 “미투운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치유로 이어지며, 그것은 “추가피해를 막”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최근에 아끼는 후배가 나처럼 피해받을까봐 걱정되어서 폭로하게 되었다. <D상담소, 사례363>”, “교생실습을 받는 중 교사가 성폭력했다. 나도 미투운동하고 싶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C상담소, 사례95>”는 내용들은 이들에게 ‘미투운동’은

자신의 피해가 해결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감의 언어이자 치유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를 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미래 지향적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는 운동이고, 힘을 받는 운동이고, 누군가의 ‘말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라는 응답을 통해 ‘듣고 공감하기’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사회적 운동이다. 이에 때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 죄책감이 든다. <D상담소, 사례355>”는 내용처럼 주변인들에게 성찰적인 공감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한편 ‘미투운동’은 가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가해자가 미투운동을 보고 추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D상담소, 사례343>”, “4년간 추행한 가해자가 미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었다. <C상담소, 사례68>”는 사례들은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의 가해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미투운동’은 이제서라도 추가적인 가해를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 피해자에서 주체로

‘미투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피해자다운 피해자’의 이미지가 피해자들 스스로에 의해 도전받았다는 것이다. 성폭력피해를 말하는 피해자들은 다양한 조건과 치유의 과정을 거쳤지만, 기간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야 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체성은 ‘병리화’되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존재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적 지원과 권리보호는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속에 필수적인 전제이지만, 상담일지에서 ‘미투’를 언급한 피해자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싸움의 의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4~5년 전에 가해자는 나를 꽃뱀이라고 몰았었는데, 미투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를 폭로하고 싶다. 나도 미투운동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D상담소, 사례388>”거나 “미투운동보면서 나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전화했다. 언론사 연계해달라. <D상담소, 사례358>”는 사례들은 ‘미투운동’이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상사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했는데,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싶다. 당시 사건에 미온적이었던 이유,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교육 및 기관의 특별교육을 요구했다. <C상담소, 사례81>

위 사례는 개인 SNS와 사내 게시판에 폭로를 비롯하여, 가해자에 대한 교육, 기관에서의 사과와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는데 ‘싸우는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피해는 4년 전에 있

었던 피해였지만,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원래부터 ‘나약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고’, ‘나약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재의 법·제도적 시스템과 문화적 인식 속에서 ‘나약한 피해자’는 만들어지고, 이와 반대로 ‘강한’ 피해자 역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미투운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좀 더 구조적으로 보는 시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성추행피해를 입었다. 10년 동안 육아휴직이 한 번도 없었던 불평등한 조직이기에 지금까지 미투가 있기 어려웠고, 그래서 미투를 해야 한다. <C상담소, 사례117>”는 언급은 성희롱,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간파’하는 인식의 변화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분노와 고통 속에서도 생존에 대한 에너지, 지각력을 지니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영역의 경계를 오가며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다(정국, 2012).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다운 피해자’ 상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주체로서 다양한 피해자의 경험과 투쟁의 과정이 채워져야 한다.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최협의설

(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정의와 특징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란 성폭력가해 과정에서 폭행 내지는 협박이 부재한 유형의 성폭력을 일컫는다. 성폭력의 발생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폭행·협박 없는 상태를 ‘동의’가 성립된 상태와 동일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준강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준강간의 경우 폭행·협박이 부재하다기보다는 이미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위계 및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유형의 범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발생하기보다는 서로 혼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절에서 편의상 작은 제목으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했지만, 성폭력피해 사건들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상담건수는 전국 4개 성폭력상담소의 1년간 상담일지 중 ‘미투성폭력’,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총 약 638건(3,484회) 중에 516건(80.9%)이다. 이 사례들은 위력과 위계가 동시에 작동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가해행위가 용이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폭

력적으로 돌변하는 등의 복합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절에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을 유형화하여 설명하려는 의도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성폭력 유형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폭행·협박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제시된 소제목에 따라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유형을 단정하고 전형화하기보다는 폭행·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가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전형성과 유형화가 명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폭행·협박’을 가장 핵심적인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많은 수의 성폭력범죄의 소실(attrition)을 불러일으키는 현실 속에서,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가해행위의 경로를 추적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이동하기 위함이다.

(2) 최협의설과 강간죄의 구성요건

최협의설은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성행위에 있어 쌍방이 동의에 이르지 못한 정황을 폭력의 유무로 파악하려는 의도로,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을 전제하여, 여성을 완전히 제압하고 저항을 시도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죄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일부의 강간 사건에서는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상대의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형태의 폭력과 협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죄구성요건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협의설의 가장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여성의 취약성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의 ‘신체적 약함’에 초점을 두는 판단의 기준은 실제 많은 강간이 물리적 힘의 세기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가시화한다.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유형별 특징

(1) 위력의 작용과 피해자 취약성

성폭력가해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장 흔한 유형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대표적인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에 있다.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아니라 주로 둘 간의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 지위와 권력의 차이, 혹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계심을 늦추거나, 강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피해자의 진학, 취업 등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피해를 입었어도 해고될까 걱정이 된다. 가해자에게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D상답소, 사례13>

직장상사가 무기계약 전환을 빌미로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하였다. 사내 인사과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났으나,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괴롭힐까봐 두렵다. <D상답소, 사례155>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강간피해를 당했는데, 업계에 소문을 낼까봐, 그리고 업무자료를 문제 삼을까봐 두렵다.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정이 나면 다시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공포스럽다. <C상답소, 사례22>

<D상답소, 사례13>과 <D상답소, 사례155>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있거나, 피해자의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해고와 직장 내 불이익의 두려움으로 인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 취약성’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부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C상답소, 사례22>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생계활동을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주된 이유가 주로 가해자가 되는 남성의 성적 본능과 공격성 때문이 아님을 말해준다. 가해자들은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실이 오히려 여성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성별권력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한 사회적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인턴이 종료될 즈음 사측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았고, 상사의 회식참석 권유와 2,3차 강요 및 집요한 추행이 있었다. 애써 뿌리치며 귀가하려는데 택시로 데려다주겠다며 동승하였고, 집 앞에 내리면 집에 따라올까봐 근처에서 내렸더니, 집에 함께 가자고 조르고, 술을 더 먹자고 강권하여 노래방에 가게 되고 그 곳에서도 성추행피해를 당했다. 계속 보내주지를 않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으면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강간피해를 당한 후였다. <D상답소, 사례434>

〈D상담소, 사례434〉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턴업무를 평가하고 향후 취업제의를 받은 곳의 상사이다. 이러한 배경 없이 이 사건을 보자면, 피해자는 강간을 피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회식참여를 거부하거나, 택시에 동승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거나, 노래방에 가지 않았으면 되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거리에서 마시자는 제안을 뿌리치면 되었다. 그러나 회식, 택시, 노래방, 편의점은 그 자체로 강간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 자, 혹은 그것을 과시하는 자에게 ‘향후 당신의 강간 범죄가 예상되니 당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거나, ‘이쯤에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간과 공을 들여 열심히 수행했던 인턴업무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그 모든 성취와 보상, 취업이 보장할 미래를 포기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취업을 단념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또는 멀쩡한 사람을 오해하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강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끈질긴 가해자의 전술과 전략이다. 가해자들은 강압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방식,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구사한다. 이번 채용으로 맡게 될 업무에 대해 조언해 준다는 언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느냐는 제안과 친절, 그리고 배려 앞에서 가해자에게 무안을 주며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이며 무례한 일이다. 이 범죄에서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를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인사권을 과시 내지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를 적절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의식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강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이 범죄의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강간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이런 치밀한 악의는 기껏해야 ‘실수’ 정도로 명명되고, 때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둔갑한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로 불리기도 한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상사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장소에 나가보니 직장상사 혼자 기다리고 있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습추행이 있었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을 직감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택시를 탔고, 가해자도 따라 타게 되었는데, 중간에 택시에서 탈출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해 퇴사하였다. 〈D상담소, 사례82〉

〈D상담소, 사례82〉의 피해자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상사의 업무지시성 연락을 받고 당연히 회사

동료들도 참석하는 모임이라 생각하고 회식자리에 나갔지만, 가보니 둘만 만나는 자리였다. 직장상사라는 관계와 업무의 연장으로서 회식 참여 요청은 피해자를 유인해 내는 매우 좋은 구실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폭력과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기습추행으로 불순한 의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지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그 자리에서 따져 묻기보다는 순순히 택시에 오르는 행동을 한다. 가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행동, 즉 강제로 키스를 당한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함께 택시에 동승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여겨졌을 것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즉각적인 저항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 폭력과 협박이 부재하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사회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사고와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불쾌감을 곧장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행위가 대수롭지 않아 불쾌하지 않거나, 그 행동을 기다려왔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직장상사인 가해자와의 관계와 파견직이라는 자신의 열악한 위치, 선부른 저항이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 목격자와 조력자의 부재, 자신의 대응에 화가 난 상대가 신체적 공격을 가할 시 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이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과 맞대응을 망설이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맥락과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사항이지만 주로 여성이 압도적 피해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러티브가 담론을 주도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행동은 주로 '저항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왔고, 남성의 행동은 제대로 주시되거나 추적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과 달리 너무 많은 이해, 정당화, 공감의 장을 가지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는데 성공하여 가해자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럴 경우, 여성이 너무 앞서나갔거나, 별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그간 피해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해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가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유인하며, 결국 빠져나가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위 사례에서 지금과 다르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동을 주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회식자리가 아님을 알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었던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기습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에게 선불리 대응하였다가 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피해자를 택시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지로 이동시키고자 한 것이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가해자의 의도와 행동을 의심하고 주시한다면,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게 될 여지가 적다. 가해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집중할수록,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속임수와 관련된 성폭력피해 경로

신체적 가해를 동반하지 않는 암묵적인 위협과 협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대부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성폭력은 주로 속임수(위계, 僞計)가 동원된다.

자신의 지인을 거래처로 연결해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을 믿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강간피해를 당했다. <상담소, 사례102>

가해자는 연기조연을 해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후 성추행을 저질렀다. <상담소, 사례117>

위 사례들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의 구도를 가진 사건으로 무고 의심에 노출되기 쉬우며,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책의 강도도 높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폭행과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물변별력 내지 인지능력의 문제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순순히 가해자가 지목하는 장소로 이동했을지,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좇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크다는 단순한 해석을 벗어나 정황에 따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지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가해자는 '모텔'을 언급하고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장소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을 쏟도록 유도한다.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손쉬운 대상을 선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거래처를 연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조용한 곳에서 진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연기조연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고 이것이 인맥이 되어 향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통상 이러한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모텔은 흔히 생각하는 '그 모텔'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한다. 자꾸 장소에 집중하면서 무엇인가 내켜하지 않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며 어이없어 하는 태도도 연출한다. 심지어 '사람을 뭘로 보느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피해자는 무례해 보이지 않기 위해, 상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선의와 배려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좋은 기

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들이 성관계에 합의하고 동조한 자들이라고 단정하고 비난하고 싶거든 가해자가 ‘사실은 연결해 줄 거래처 따위는 없으며, 연기조언을 해 줄 생각이 없고, 그저 너를 강간할 계획이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모텔에 따라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교한 가해자를 비난할 일이지,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추궁 받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폭행과 협박의 유무를 성폭력의 구성요건으로 여기는 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대적인 대치관계, 극적인 상황이 점차 고조되는 과정을 통해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여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전형적 생각본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음주 및 약물의 복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공격 행동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 어떤 피해자는 성폭력의 순간에 자기방어적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속임수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위기의 순간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기보다는 매우 평범하거나 심지어 친밀한 환경과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가해자가 자기가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가게 되었고 가서 굴을 먹고 집을 구경하였다. 굴을 다 먹고 집에 가려하자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올리고 추행하였다. <D상담소, 사례253>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으로 함께 술을 먹고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를 호의로 받아들였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현관까지 같이 들어와서 물만 한잔 먹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집 안까지 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거절하였으나, 거듭 물만 한잔 마시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해서 물을 따라주었는데, 그러자마자 침대 쪽으로 밀치고 강간하였다. <D상담소, 사례267>

가해자와는 데이트 관계였고 룸메이트가 기숙사를 비운 사이 가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다. <D상담소, 사례227>

소개팅 어플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렌트차량으로 집에 바래다주겠다, 자기 집의 고양이를 보고 가라며 가해자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D상담소, 사례236>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장한 은근한 비난은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었느냐’에 관한 것

들이다. 이는 여성피해자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태도 중 하나로 어리석거나 혹은 잔피를 부리다 범죄자를 인생에 끌어들이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여성 비난적 태도이다. 이 질문은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교묘하게 유인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가장했으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로빈 월쇼(2015)는 성폭력가해자들은 첫인상부터 범죄를 예견할만한 느낌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남자들이라는 것, 오히려 평범을 넘어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별다른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한 곳을 구경하고 가라”, “목이 마르니 물을 한잔 마시고 싶다”, “고양이를 한번 보고 가는게 어때?”라는 대화 속에서 ‘너를 성폭행하겠다’는 의미를 찾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어리석거나 성관계에 동의한 정황으로 찾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야비한 성폭력범죄 계획과 상대를 교묘히 유인해 내는 악의적 행태를 질타할 일이다.

(3)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준강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이 부재한 이유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대다수가 적어도 ‘아는 사람’, 피해자의 기준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두 가지 취약성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첫째는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푸는 것이고, 둘째는 음주 및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취약하게 하는 것이다. 아래의 상담일지 사례들은 이를 드러낸다.

가해자는 동아리 1년 후배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화장실에서 나체로 피투성이인 채였다. 그 후 약에 취해 2시간을 더 잤고 깨어나서 집에 가려고 나서니 콘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를 의심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으며, 처음부터 약물복용을 의심했었는데, 경찰단계에서 약물음성반응이 나왔었고, 검찰에서 재조사요청을 하여 양성 반응으로 마약이 3종류나 검출되었다. <D상담소, 사례237>

아르바이트 업무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게의 사장인 가해자와 술을 먹은 뒤 필름이 끊겨 그 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에는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다. 이후 정신 차려보니 모텔에 있었고, 옷은 다 벗겨져 있었다. <D상담소, 사례254>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호프집 사장에게 준강간피해를 입었다.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고 사장이 화식 겸 자기 집에 가서 술 먹자고 권유하여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이상해서

깨보니 가해자에게 강간당하고 있었다. <D상담소, 사례269>

아르바이트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였는데 가해자가 집으로 데려다주고 강간하였다. <D상담소, 사례 56>

통상 강간사건에 술이 개입되면, 사건에 개입된 자 모두가 인사불성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음주로 인해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험한 행동에 자발적 참여를 한 행위자로 여겨진다. 피해자가 만취해 있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심해지고, 가해자의 책임은 가벼워진다(Goodman-Delahunty & Graham, 2011; Schuller & Stewart, 2000).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강간피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해석은 가해자가 강간을 실행할 때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위의 <D상담소, 사례254>, <D상담소, 사례269>는 함께 술을 마시다 둘 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성적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유도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면식 없는 낯선 이가 아닌,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장이 지금껏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답과 격려의 차원에서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했을 때, 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사장의 기분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안 쌓여진 친분과 친밀감으로 인한 신뢰관계도 경계심을 풀고 술자리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들과 달리 <D상담소, 사례254>는 심지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하게 한 뒤 강간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만취 상태인 것을 가장해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 아래 <C상담소, 사례30>와 <D상담소, 사례83>에서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척 행동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불성이 돼서 몸조차 제대로 못 가누어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성폭력가해자로 돌변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 직장동료인 가해자와 술을 마시다 그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가해자 집에 도착하여 가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성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하여 놀라 뛰쳐나왔다. <C상담소, 사례30>

업무 후 술을 먹고 취한 가해자를 호텔 방에 데려다주자 강제로 방에 들어가게 하여 가해를 시도하였다. <D상담소, 사례83>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취감정’이라는 가해자 편향적인 사법적 관용이 남용되어 온 사회적 맥락에서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극대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최소화되는 상황을 유도하여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피해자에게 오명과 비난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폭행과 협박보다는 평소의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연민을 얻는 과정이 성폭력가해 과정에서 더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니던 종교단체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 지인 등 셋이서 함께 술자리를 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옮겨져 강간피해를 당했다. 고소하자 그 종교단체의 장이 내가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가해자가족도 나에게 전화해 여지를 줬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C상담소, 사례9>

아르바이트 동료가 술자리를 즐라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술을 몰래 버리려 하는데도 계속 강권하여 독주를 연거푸 마시게 되었다. 막차가 끊겨서 24시간 카페에서 술을 깨고 첫차를 기다리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옆의 모텔에서 잠시 쉬면서 술을 깨고 첫차를 기다리자고 끈질기게 회유하여 응하였다. 그러나 정작 모텔에서는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강간피해를 당했다. <D상담소, 사례5>

데이트 상대였던 가해자와 OO로 놀러 갔다가 데려다준다고 하여 가는 중 가해자가 졸음운전 때문에 힘들다며 모텔에서 쉬다 가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찜질방에 가자고 서로 간에 실랑이를 벌였지만, 가해자가 전기매트가 있는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다며 설득하였다. 전기매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꾸 스킨십을 요구했고 그 정도만 응해주면 다른 요구는 안 하겠지 싶어 응했는데 결국 강간에 이르게 되었다. <D상담소, 사례268>

<C상담소, 사례9>의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과 술을 함께 마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 혹은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D상담소, 사례5>의 피해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귀가하지 않고 가해자와 첫차를 함께 기다린 것은 성관계에 대한 은근한 제안이 아니다. <D상담소, 사례268>의 피해자 역시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가해자의 간청과 연민을 믿고 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을 주목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통념과 관행은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있을 때, 그리고 가해자에게 속아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극대화된다. 위 사례들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위협에 빠뜨렸으며, 상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 어리석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쉽다. 실제 <C상담소, 사례9>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네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모욕을 당하

고, 종교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비난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비난이 있다면, 그것은 강간을 모의하고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를 ‘신뢰’했었다는 것이다. ‘나를 못 믿느냐’,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며 도리어 인성을 높이는 가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순수하지 못함을 탓했던 것,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상대를 믿었던 것, 너무 아프고 힘들어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마음을 써줬던 것이 피해자들이 했던 행동의 전부이다.

신뢰관계에 있는,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지 가해자,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객관적 사실, 가해자를 신뢰했던 피해자의 판단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시하는 가해자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연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준강간을 저지를 때, 범죄의 기수율이 높으면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나를 자취집에 데려다주고, 죽을 사다주었다.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 바닥에서 자라고 했으나, 침대에 같이 누웠다. 친구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두었는데, 성추행피해를 당했다. <C상담소, 사례1>

위의 사례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신뢰획득 과정이 들어 있다. 집에 바래다주는 행위, 많은 음주로 인해 속이 불편한 피해자를 염려하며 죽을 사다 주며 돌보는 행위 등은 가해자가 구사하는 신뢰획득 전략이다. 이런 행위들은 가해자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할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늦추고 안심하는 사이에 범죄는 발생한다.

(4)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가해지는 성폭력

음주, 약물, 수면으로 인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은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나서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더 먹자고 해서 그러기로 하였다.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 해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자신이 거부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강간피해를 당했다. 심한 폭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손목을 잡고 눌러 저항하기 어려웠다. <D상담소, 사례196>

하지 말라고 했으나 술에 취해 방어가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하였다. <D상담소, 사례76>

음주로 인해 신체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것이 실제 범죄의 발생을 저지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해 강간을 피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저항을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잠들었는데, 자던 중에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나 무서워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D상담소, 사례158>

아르바이트 회식 종료 후 술에 취한 나를 가해자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함께 귀가하였고, 귀가 중에 강제추행이 있었다. 집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와 2회 강간하였다. 술에 취해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어 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무시하고 강간하였다. 강간 당시에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 <C상담소, 사례14>

5년 전 알바하면서 알게 된 같은 대학 다니던 사람과 만나고 있었고, 그를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여관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만, 반항하면 더 자극시킬까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다. <D상담소, 사례114>

성폭력을 당할 때 저항을 해서 죽는 것보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D상담소, 사례31>

자신을 공격하는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성폭력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한 위협에 대한 평가는 피해자 자신만이 내릴 수 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어느 누구도 공포와 두려움, 위협에 대한 호소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럴 의도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많이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는 가해자의 항변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움츠러들어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없어 신체적 상해의 위협이 최소화되었던 것이고, 저항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 혹은 강요로 인해, 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말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강간 및 강간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폭력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다른 범

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범행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월쇼, 2015)”이라는 매우 명료한 판단 기준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써내려 간 성폭력 신화 및 통념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들이 저항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거나,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변명해야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성폭력 신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성폭력 신화란 성폭력, 성폭력피해자, 그리고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전형성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도 그간 수차례 논의되었던 성폭력에 대한 신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해자가 완벽히 모르는 사람일 것,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정신이상자이거나 사회의 낮은 계층일 것, 주로 심야시간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이다. 성폭력에는 신체적 폭력이 자행된다는 것과 피해자는 강력한 저항을 통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그 전형성과 들어맞지 않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영향을 끼친다.

성폭력 신화에 관한 연구(Jenkins, 2017)는 피해자들이 법적 강간의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성폭력피해를 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성폭력 신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강간으로 정의내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성폭력 신화의 사회적 기능임을 밝히고 있다.

1년 전 가해자를 집에 오라고 해서 강간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가해자를 집에 오라고 한 점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D상답소, 사례178>

강간피해를 신고하였다가 도리어 무고혐의로 피소되었는데, 내가 당한 일이 강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가해자가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다. 이것을 강간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강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가. <D상답소, 사례211>

성폭력 신화는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신화는 여성이 강간당하기를 원했거나, 강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옷 입는 방식이나 취한 상태,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을 여성이 바로 강간을 원했거나 촉발한 증거로 삼으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강간신화에 의해 자기자신을 비난하는 법을 먼저 익힌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다. 위 <D상답소, 사례178>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허용한 것을 성관계에 대한 합의와 동일시하려는 성폭력 통념의 영향 때문이다. 또한 위 <D상답소, 사례211>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간이라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며,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는 데에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이 아니라는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5) 강간을 합의된 성관계로 조작하려는 시도

성폭력 혐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그것이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합의된 성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들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일 때, 폭행과 협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저항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때이다. 가해자들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술수를 사용한다. 그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카톡과 문자를 전송해 친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성폭력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카톡으로 속은 괜찮냐, 어디까지 기억하냐 등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보고 화가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나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것이 두려워 결국 포기하였다. <C상담소, 사례14>

가해자는 고교동창으로 몇 달 전부터 만나자고해서 만남을 이어왔다. 1차에서 술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마시던 술이 아닌 다른 술이 따라져 있었다. 별 의심 없이 그것을 먹었는데, 먹고 난 후의 기억이 없다.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니 잘 도착했다는 가해자의 문자가 와 있었다. <D상담소, 사례241>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취중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몸에 남은 흔적과 의구심으로 성폭력피해를 의심하고 있는 즈음, 혹은 성폭력피해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자신을 신고할 것인지를 떠보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한 문자를 보낸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대뜸 화를 내며 따져 묻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대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관이나 주변인들은 주로 피해자의 응대를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언론에 기사화된대로 ‘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와의 카톡 내용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피해자의 대응이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⁸ 성폭력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둔갑시키기 위한 가해자

8 2017년 11월 19일자, 뉴시스, “한샘 피해 여성은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을 보냈나”,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7_0000151676

의 의도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합의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신뢰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침묵시킬 요량으로 의도적 소문내기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강간피해를 입고 있었다. 나는 성관계를 원한 적이 없고 동의한 적이 없어 명백한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회사에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 <D상담소, 사례233>

1년 전 친구들과 모여 술을 먹고 자는 도중 가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및 강간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은 알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후라 취하고 졸려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가해자는 나도 그 상황을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D상담소, 사례449>

위의 사례들은 가해자들이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의보다는 저항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성관계라는 인간의 행위가 남성중심적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말한다. 성관계라는 인간 간 행위를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남성이 원할 때, 남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남성 주도적·우위적 행위로만 이해하고자 할 때 ‘동의’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은 개념이다. 상대, 즉 여성의 동의를 요구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통제권의 일부를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acKinnon, 1989). 이는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과 주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통제와 지배 하에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객체로 인지하고 있는 차별적 의식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성폭력가해자에 관한 연구들(Abbey et al., 2001; Abbey and McAuslan, 2004; Carr and VanDeusen, 2004; DeGue and DiLillo, 2005; Forbes, Adams-Curtis, and White, 2004; Loh et al., 2005; Parkhill and Abbey, 2008; Vega and Malamuth, 2007)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폭력 신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도 가해자의 특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DeGue, DiLillo, and Scalora, 2010; Locke and Mahalik, 2005; Zawacki et al., 2003),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심한 것과 성폭력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Carr and Van Deusen, 2004)도 있다.

강제와 강압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폭력과 협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강간 사건의 경우, 남성들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기보다는 친절하지 않은, 배려가 부족한, ‘나쁜 섹스’라고 인식한다. 혹은 상대의 행동을 보고 동의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거나, 동의의 정황을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장 워크숍에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가해자는 본인이 안전하게

방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안심시키고 동료들을 방으로 보내고 내 방으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는 나가면서 문을 잠그라고 했으나 나는 만취하여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잠들었고, 잠에서 깬을 때 강간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었다. 후에 가해자가 자신은 동의된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척 화가 났다. <D상담소, 사례230>

위 사례의 가해자는 만취한 직장동료를 방에 데려다주며, “문을 잠그라”는 말을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문을 잠그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게 된다. 그리고 되돌아온 가해자에게 강간피해를 입는다. 가해자는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분노케 한다. 이는 가해자가 문을 잠그라는 것을 성관계의 제의로,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6) 재범의 동기, 그리고 조건으로서의 가해자 면책

죽음을 불사하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 저항을 무력화할 만큼의 엄청난 폭행과 협박의 자행이라는, 어찌면 현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전형성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진짜’ 성폭력들이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집으로 초대한 것은 성관계에 대한 제안이나 다름없다’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신화 속에서 가해자들은 면책되고 피해자들은 자책한다. 이는 단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도처에 넘쳐 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이는 성폭력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성폭력가해자가 면책의 조건을 활용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1학년, 법적으로 미성년자일 때 술에 만취하여 대학 선배에게 강간과 성추행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힘이 들어 자살시도도 했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던 중 가해자가 현재도 다른 신입학생들을 데리고 가해자 집 근처의 모텔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추후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D상담소, 사례225>

위의 사례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는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으며, 성폭력 신화에 피해 부추겨진 가해자는 더욱 과감해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에 맞서 더 이상의 가해를 중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여전히 한국에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더 나쁜 경우 무고의 피의자로 의심되거나 처벌받을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성폭력인가 하는 매우 본질적인 물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남성만을 성적 주체로 상정하여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적극성 및 구애,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으로 해석하고, 상대의 성적 욕구를 받아줄 의무가 마치 여성에게 있는 양 해석하는 문화적 토양 내에서 성폭력의 빈번한 발생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분명한 범죄라는 단언이 필요하고,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동의한 성관계일 수 있다는 애매하고 모호한 인식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기보다, 가해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변명하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의 이동이 필요하다.

3. 장애인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성폭력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례는 비장애인이 피해자인 사례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장애와 비장애가 확연히 구분될 수 없고 연속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성폭력과 구별 지점을 찾기 어렵거나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사례들도 많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피해자 자신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성폭력피해의 양상과 가해자의 행위 방법, 피해자의 대응, 주변의 대응 등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 구성요건, 피해자 지원제도, 법 해석 등에서 장애인 피해자와 비장애인 피해자를 구별해두고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계속 질문한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은 비장애인보다 더 폭행·협박이 존재하기 어렵고, 동의여부는 더 심각하게 오해되며, 지적장애가 많아 직접 고소하거나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비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애인성폭력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공론화가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장애인성폭력 상담사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폭력 상담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례를 모아 검토함으로써 장애여성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특성, 피해의 양상, 가해의 특성, 피해자의 대응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해서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언제나 동일한 ‘특성’이 발견될 것이라거나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특성’이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정도와 다양성을 감안하고, 장애를 의학적 개념에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어떤 장애인은 훨씬 더 ‘중한’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비장애인은 장애가 아닌 다른 사유에서 성적 접근을 판단하는 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성폭력 상담사례는 장애인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B상담소의 상담일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상담사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총 13건이며, 모두 지속상담 사례이다. 다른 상담소에 비하여 B상담소의 분석대상 사례 건수가 적은 편인데, 지난 1년간 B상담소의 상담건수는 훨씬 많지만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1회성 상담의 일지로는 상담 및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속상담으로 사례 관리 중인 13건을 선별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B상담소의 지속상담 사례들에서 상담 회차는 사례당 적게는 17회에서 많게는 85회에 이르렀는데 상담횟수로 보면 적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상담은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장기간의 지속상담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자에 의한 과거의 성폭력피해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상담소의 일지에서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모두 단기 상담이어서⁹⁾ 장애인성폭력의 특성과 관련된 분석을 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분석대상 사례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으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례가 8건,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2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례가 2건, 성폭력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례가 1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B상담소의 상담일지에는 최초 상담 이후 심리상담뿐 아니라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타기관 연계 등의 피해자지원 내용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상담소의 의견서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수사 및 재판 결과 등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성폭력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이장에서 인용의 방식은 다른 장과 달리 상담원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상담원의 기록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표현에 대한 해석과 축약, 부가 설명을 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부추긴다.¹⁰⁾ 윤희정 외(2015)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더 낮았고,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당수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인 B상담소의 상담일지에 나타난 장애여성 피해자들에게서도 낮은 자존

9 장애인 전문 상담소 외의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편이어서 장애인 피해자 사례는 대개 연계 전의 단기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10 이지수(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 27집 1호; 신준섭 외(201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충북지역 거주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7집 등 참고.

감과 자기비하, 성폭력에 대한 자기 비난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

〈B상답소, 사례3〉에서 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으며 이웃인 가해자의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고 있던 중, 가해자의 집에서 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는 게 똑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B상답소, 사례3〉

〈B상답소, 사례3〉은 초등학교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러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경험도 있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성폭력에 대하여 자신이 “똑똑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자존감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는 가족들의 차별대우, 특히 오빠(비장애, 취업준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해외 어학연수,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자신만 혼내는 상황에 대해 우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장애가 있고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등 자존감이 매우 낮음. 자살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하며 실제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함. 〈B상답소, 사례10〉

상담원의 기록에 따르면, 위 사례의 피해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까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였다. 상담일지에는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피해자의 걱정 때문에 변호사 상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고, 부모님에게 알려지기 전에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서 담당 형사에게 자꾸 연락해 합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가족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가 화가 난다면에서도 자신이 “장애가 있고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혼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나도 같이 사랑해줘야 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동정심, 호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무슨 상황인지, 내 잘못도 있는 건지, 내가 빠져나왔다면 일이 커지지도 않았을 텐데 술을 먹어서. 〈B상답소, 사례4〉

〈B상답소, 사례4〉의 피해자는 상대방의 성적 접근을 “나를 사랑해서”라고 이해한다. 경계선급 지능인 피해자는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보다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의사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나도 같이 사랑해줘야 하

는 건지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지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태도를 취한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내가 빠져 나왔다면 일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한다.

성폭력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비난하는 위 사례들에서 장애여성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B상답소, 사례3>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이모부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B상답소, 사례4>는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알콜 문제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방임을 경험하였으며, <B상답소, 사례10>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대우와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나타난다. 대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제한적인 장애여성이 가족 내에서까지 차별, 통제, 방임 등의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고, 성폭력피해마저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2) 친밀성과의 혼동을 이용한 성폭력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고도의 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거나 강제력이 없었다고 진술할 때, 자칫하면 성폭력이 아닌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B상답소, 사례6>에서 30대의 지적장애 1급 여성인 피해자는 이웃인 62세 남성으로부터 길거리, 가해자의 집 등에서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가해자에 대한 표현은 이중적으로 나타났다.

본인 진술에서 처음에는 추행이었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할아버지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사이, 남친으로 표현이 바뀌심. 이전에도 피해경험 있으나 피해 인식은 없음. 피해자는 양가감정이 있는데 가해자가 4천 원, 천 원 등의 돈을 주었다고 함.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빈약한 상태임. 피해자 진술에서 할아버지 집에 2번 간 적이 있고, ‘할아버지 고추 했어요(그림으로 그리며)’라고 말하거나 본인 성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쉬, 쉬’ 말하고 ‘아파서 싫어요’라고 말함. 할아버지가 내담자 옷을 전부 벗겼다고 함. 할아버지한테 들은 말 있는지 물으니 ‘사랑해요’라고 적음. 본인은 ‘결혼해’라고 적어 결혼하고 싶은지 물으니 그렇다고 함. 할아버지가 뽀뽀하는 것은 싫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냄새나서’라고 말함.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졌어’라고 말함. 내담자는 임신, 출산, 결혼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있는 듯. 할아버지와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B상답소, 사례6>

상담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에 대하여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사이”, “남자친구”와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 결혼하고 싶다는 표현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30년 가량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간단히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¹¹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나 결혼에 대한 욕구의 표현과는 달리 추행 과정에 대한 진술에서는 “아프다, 싫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건이 공식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내담자가 자신이 겪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를 폭력으로 인지했는지는 차이가 있음. 현재 내담자는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는 폭력으로 인지하는 것과 달리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성적 욕구, 임신, 출산, 결혼에 대한 욕구와 혼동되어 피해 인지에 혼란을 겪고 있음. (B상담소, 사례6)

이 사례에서 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는 과거에도 성폭력 피해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 상담일지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성적 접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적 접근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성적 접근은 폭력으로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수개월 간 알고 지내던 이웃이 성적 접근을 하고 돈을 주기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는 폭력으로 인식되는 대신, 친밀성, 성, 결혼 욕구에서 일종의 가능성으로 경험되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가해자에 대한 호감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지적장애여성의 ‘자유로운 선택’, ‘합의에 의한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지적장애를 이용한 성적 착취를 방임하고 나아가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의 말에서 친밀성의 표현과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의 혼재는 오히려 ‘그루밍’ 피해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3)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그루밍’이란 취약한 상대방을 길들여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사회의 장애인 차별적 태도,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화 방식, 친밀한 관계의 부족과 사회적 고립 등은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착취에 취약한 존재가 되도록 한다. 가해자가 지적장애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폭행·협박·위력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대신

11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관계 이전의 추행은 성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성적 접근은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더 안전한’ 성적 착취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B상담소, 사례4〉에서 가해자는 경계선급 지능의 피해자에게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식당 사장까지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가해자는 평소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이쁘다”, “전화번호 알려달라”면서 접근하였다고 한다. 피해당일에도 가해자는 새벽에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사장,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갔다가 취한 피해자를 토굴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싫다며 피하고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간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임신하여, 나중에 임신중단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찜질방에서의 성폭력피해 이후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가해자와 연락하며 만나고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성폭력피해자답지 않다’고 평가되곤 한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 사이가 좋아져 더 자주 만났으며,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동거하게 된 것이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은 아이를 책임지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가해자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었을지언정 연인 관계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찜질방에서의 피해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며 만난 것이 임신 우려 때문이었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낙태를 선택할 수 없어서 계속 만났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보다도 성폭력의 결과로서의 임신이 재차 가해자의 성적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신고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큰일났다,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 그 아저씨가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살갑게 대해주니까 뭔가 따뜻하게 느껴서 그랬나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원해서 성관계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로 벼락 같이 임신된 것이다. 변호사님이 카톡 보고 ‘연인 같네요’ 해서 가슴이 철렁했다. 전에 낙태 경험이 있어서 섣불리 그게 안 된다. 원치 않는 성관계든 어쨌든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만나고 집에도 가고 밥도 먹고 연인처럼 그렇게 했다. 〈B상담소, 사례4〉

상담일지에 나타난 피해자의 이야기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만나고 성적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과거경험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모로

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냈다. 부모의 불화로 어머니가 6년 간 가족을 떠났던 적이 있고 알콜 문제가 있었던 아버지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고3 때부터 자주 외박을 했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를 하곤 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족과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남자친구’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온 적이 있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도중에 이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성관계를 한 경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수술을 하였다. 이미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낙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이번 사건에서도 임신이 우려되자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가해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탁틴내일연구소(2017)에서는 ‘그루밍’이 ① 피해자 고르기, ② 피해자의 신뢰 얻기, ③ 욕구 충족 시켜주기, ④ 고립시키기, ⑤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⑥ 통제 유지하기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가해자는 장애, 연령, 빈곤, 방임, 고립 등 피해자가 처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가해자는 학습, 훈련, 속임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성적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두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성관계의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적인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B상담소, 사례4>에서도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반복되어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특별한 강제력 없이도 쉽게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듯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친밀하게 느끼도록 한 뒤 수월하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친밀성을 무기로 별다른 강제력 없이 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의 접근 행위가 의도적인 길들이기 과정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장 배경, 과거의 이성 경험 혹은 친밀한 관계의 경험, 현재 피해자가 처한 조건, 낮은 지능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루밍’이 항상 성폭력에 선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루밍’ 이후 강제력이 불필요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폭력 이후에 ‘그루밍’이 이어지면서 성폭력의 폭력성이 희석되기도 한다. 성적 착취가 앞서고 길들이기가 사후적으로 뒤따르는 때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친밀성을 강화시키고 신뢰를 쌓으면서 앞선 성적 착취의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관계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후적으로 성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¹² 설령 성폭력 이후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성폭력이 폭력이 아니었던 것으로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과거의 폭력과 현재의 관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 특성, 그 구분하기 어려움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의 폭력성은 ‘소멸’하게 된다. 사후적 ‘그루밍’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진술 ‘모순’이 나타나면, 위 (B상담소, 사례 4)에서처럼 ‘증거는 불충분’해지고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면한다.

지적장애인에게 배타적인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다.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지적장애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는 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남성들을 만나는 것이다. ‘고민을 나눌’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지적장애여성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남성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 결과,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경험이 주된 인간관계의 경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성적 착취 피해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경험되는 것이다. 강제력이 없었지만 원치 않은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거나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성적 착취의 일종인지,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강제력 유무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와 의도에 대한 탐색, 장애여성의 생애경험과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4)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되는 피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성폭력 사례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성폭력피해가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된다는 것이다. 피해가 반복되면 피해 진술에서 피해자가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피해를 혼동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혼동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를 불신하고 피해자가 과거 피해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항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거나(김정혜, 2015),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¹³ 반복적인 피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성폭력 이후의 ‘그루밍’으로 인하여 마치 처음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오인됨으로써 성폭력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양애리아 부소장의 자문에서 나온 것이다. 양애리아 부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이 성적 착취 이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피해 이후에 ‘그루밍’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13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는 진술의 구체성이다. 구체성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성이라는 요소를 판단할 경우, 최초 피해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과거에도 이미 피해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경험과의 혼동이 의심되면 진술이 구체적이라도 그것이 문제된 사건의 피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혜(2015), “장애여

그러나 상담일지에 나타나는 장애인 피해자의 생애경험은 성폭력 피해경험의 반복이 도리어 장애 여성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반복적 피해를 입는 장애여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삶이 성적 착취에 취약한 조건에 있음을 뜻한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에 따르면 성폭력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가 더 많다.¹⁵ <B상담소, 사례3>은 아동·청소년기에 친족 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고, <B상담소, 사례6>의 피해자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특히 <B상담소, 사례6>은 30대의 지적장애 1급 여성이다.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과거에도 성폭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폭력피해를 입었고, “특히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전 생애에 반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약 10여 년 전에 동네 경비원에 의한 강간피해로 고소를 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2년 뒤 계모의 동거남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이번에 상담한 사안 또한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피해 경험은 수차례이지만,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적 접근은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아는 사람에 의한 성적 접근은 성폭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변 사람에 의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반면 <B상담소, 사례12>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상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35세의 여성으로,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행동으로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피해 당일에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떨어진 동네에 갔다가 공원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고 3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피해 장소는 집에서 먼 곳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DNA 증거도 확보되지 못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었다. 이 피해자는 과거에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피해경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돈이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상대 남성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례들이 많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작은 대가에도 쉽게 유인되고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낮으며 주장하더라도 불신당하고 장애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가해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성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56~257쪽 참고.

- 14 강간피해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2.3%인 데 반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77.7%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가족부(2016b),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51쪽 참고.
- 15 장애인성폭력 판결문을 분석한 김정혜(2015)에서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연도별로 10.3~21.6% 수준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나타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많았다. 김정혜(2015), 위의 논문, 122쪽 참고.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상담 도중에, 과거에도 지적장애여성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며칠간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거나 일정 기간 동거를 하였던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하거나 남자친구와 동거하기도 했다. 가족과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나누어서 좋았다. 동거남에게 폭행 당해서 집 나온 적도 있다. 거절하지 못해서 새 남친 사귀는 도중 전 남친이 연락 오면 만나고 성관계도 하고, 거절 못한 게 후회된다. (B상담소, 사례4)

위 사례는 피해자가 과거에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한 경험을 보여준다. 상담일지에는 당시 관계에서 강제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적장애여성이 친밀성과 폭력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그루밍’에 취약함을 감안할 때, 친밀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와 동거가 전생애에 걸쳐 반복되는 상황은 지적장애여성의 ‘자유로운 섹슈얼리티 실천’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성적 착취의 반복적 경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장애인성폭력 상담사례에서 폭력이나 피해자의 저항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강간죄에 해당할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를 피해자의 장애에 따른 취약성으로만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몸을 비틀거나, 가해자를 밀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에 대하여 또는 적어도 자신의 몸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단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갖지 않은 피해자들도, 폭행·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하였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것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거나 화를 내거나 회유하는 방법, 혹은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위협받거나, 회유를 당하거나, ‘어차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항을 포기했다. 즉 장애인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요소들은 폭행, 협박 외에도 가벼운 신체적 위력, 거친 말투, 화난 표정, 회유, 무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성적 경험을 가해자의 가시적인 강제력 여부나 정도,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의사, 피해자의 장애 종류나 정도 등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폭력을 사랑, 성관계로, 착취를 친밀성으로 이해하게 된 피해자의 ‘길들여짐’은 가해자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생애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사회적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가해자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성적 경험의 성폭력으로서의 성격은 피해자의 장애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 그러한 조건들을 가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4.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 분석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가 대중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의 각종 역고소이다. 이 글에서 성폭력역고소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을 고소한 후 가해자 및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 위증 등으로 고소·기소하거나,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고소 유형으로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등에 사실을 알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390조, 제750~766조)으로 역고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고소는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은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후, 더이상 금전적 합의로 인해 고소가 취하지 않는 상황과 양형 강화,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성폭력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호사 업계의 무분별한 홍보, 시장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행법과 수사·재판관들의 성폭력 통념 속에서 옹호되고 있다. 가해자가 실제 고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역고소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크게 위축되어 대응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미투’를 언급한 상담들은 고소 시에는 무고에 대한 우려를, 공문화를 고민할 때는 명예훼손을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원들은 상담 시 역고소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절에서는 지난 1년여간의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이 어떠한 용도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가해자에게 역고소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역고소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 이후 역고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역고소 사례들은 분석대상 시기인 2017년 6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담들이 많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속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이 절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담건수는 전국 4개의 성폭력상담소의 1년간 상담일지에서 ‘미투성폭력’,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역고소’와 관련된 상담 총 약 638건(3,484회) 중 109건(17.1%)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 협박, 우려를 상담했던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역고소의 실태, 역고소의 조건과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가해자의 출구 전략으로서 역고소 위협 및 역고소

(1) 신고, 공론화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 막기

현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통상 1항을 ‘사실적시 명예훼손’, 2항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표현한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 온라인 등에 공론할 경우 가해자는 이 법을 근거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D상담소 사례에서 “가해자가 학생회장 후보로 나와서 피해사실을 대자보로 게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받았다. <D상담소, 사례228>”거나 “페이스북에 2년 전 직장 내에서 겪은 성희롱을 알렸는데, 가해자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하더니 고소하겠다고 삭제하라고 협박했다. <D상담소, 사례337>”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상담소들에서 진행하는 변호사 상담이나 법적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또한 “가해자가 ○○○ 위원장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폭로하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상담소, 사례23>”하는 사례나 “종교단체 관계자가 수차례 성추행을 해서 주위에 알리자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상담소, 사례86>”한 사례들에서처럼 위협을 넘어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사례들의 특징은 가해자가 해당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경우들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하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공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말하기를 결심하지만, 반대로 이들은 그만큼의 권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역고소를 감행한다. 특히 위 사례들처럼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사법적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데, 이는 현재 명예훼손죄가 성폭력가해자들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그러나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는,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위법성의 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실성, 상당성(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박선영, 2007). 또한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도3191 판결]고 판시하고 있

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면 부수적으로 사익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도 인정[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배상균, 2018, 재인용)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제307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성폭력 피해경험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비방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위한 공익성이 강하므로 유죄로 판결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전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들까지 역고소한다. <D상답소, 사례238>의 경우 “친구가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피해자 동의 하에 SNS에 관련한 글을 게시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D상답소, 사례314>”거나, “교회에서 높은 분이 성추행해서 엄마와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D상답소, 사례30>”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 뿐 아니라 엄마까지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강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하는 엄마를 보면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소의 주체는 가해자 당사자를 넘어 가해자 주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10년 전 피해 이후 계속 힘들다가 몸이 회복된 후 가해자 회사의 팀장에게 사실을 전달하면서 언론에 알려겠다고 했더니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사과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 주는지. <D상답소, 사례419>

이는 사람에게 성폭력 당했는데, 고소 전에 사과받고 싶어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더니 가해자 부인이 협박으로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C상답소, 사례62>

위 사례들에서 성폭력가해자의 가해사실은 그 소속기관, 가족들의 명예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역고소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주변인들까지 확장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론화나 고소를 결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의 사례들처럼 “사과”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발언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을 요구하는 발언이고, 사과하면 신고·고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는 피해자는 신고·고소 이전에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가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요구한 ‘인정에의 요구’를 ‘협박’으로 전유하여 역고소의 빌미로 삼고 있다. 특히 위 <C상답소, 사례62>는 금전적 손해배상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심사하지만, 「민법」의 경우 특칙 764조¹⁶만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박선영, 2003).

여기서 생각해볼아야할 것은 가해자들은 가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노력을 하기보다,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화’하면서 법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점이다. 가해자들은 ‘가해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느끼며 가해자 정체성에 저항하는데 이러한 저항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다(김보화, 2011). 위의 사례들처럼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 이전에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기대, 신념, 반성, 사과에의 기대를 가지고 말하기를 결심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사법적 위협이라고 했을 때,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피해자의 위치는 흔들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성폭력역고소는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전유’하여 ‘피해자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법·제도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형사·사법 절차 안으로 가져왔을 때, 피해자의 법·제도적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D상답소, 사례5> 사례에서 “가해자는 공판에서는 피해자가 꽃땀이라고 주장하고 뒤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가해자 부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C상답소, 사례56>”는 사례들처럼 역고소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C상답소, 사례56>에서 가해자는 대학교수로 학내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가해자의 부인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경우이다.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에는 합의 시 성폭력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 주변인, 경·검찰 등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혹은 역고소에 대한 협박의 용도로 합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자친구의 성폭력을 고소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동시에 고소했다. 너무 힘들었다. <D상답소, 사례140>”는 사례처럼 역고소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와 기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6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강간으로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너무 취해있었고, 가해자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무고죄로 꽃뱀으로 몰릴 것 같다. 그냥 강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가. <D상답소, 사례211>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만취한 상황에서 성폭력피해를 입고 바로 고소하였지만,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스스로의 피해를 부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상황 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사례의 “무서워서”라는 표현과 같이 피해 직후의 감정으로 피해임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시에 성적 관계를 원했다면 “무섭다”는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불안감은 더 강화될 것이고 “강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 후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의 법적 대응 과정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스스로 피해가 아니라고 해야 더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하게 되는데, 앞서 ‘미투운동’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폭력피해자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3) 피해자에 대한 보복

성폭력가해자들의 역고소는 피해자의 공론화나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세도우핀즈(2016)는 『SP-01 :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에서 가해자의 각종 역고소를 ‘보복성 고소’로 명시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자에 대한 위협, 위축, 무력화와 함께 자신을 곤란에 빠뜨린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D상답소, 사례82>의 경우 직장상사에 의해 성추행피해를 입었고,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가해자는 무고로 고소하였다. <D상답소, 사례188>은 성폭력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후에 가해자는 그간에 주었던 선물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일주일 만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합의한 내용을 무고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성 괴롭힘’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는 무고뿐 아니라 다양한 죄목으로도 나타난다.

가해자와는 데이트 관계였는데 이전에 입었던 성폭력피해를 털어놓자 그 이후부터 이 사실을 이용한 욕설과 협박이 시작되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가 사정해서 합의문을

제출하였는데 태도가 돌변하여 차가 흔들려서 손을 잡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였다. <D상담소, 사례121>

위의 사례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역고소로 이전 성폭력 피해경험을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의 괴롭힘을 고소하자,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지 고소’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이전 피해경험을 ‘걸레’와 같은 표현으로 비난했던 언어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강간했고, 학교 교수님에게 말했는데, 자퇴하겠다고 가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은 후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D상담소, 사례167>

위 사례에서 피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뭘 원하느냐고 해서 지나가는 말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학과 교수님께 알린 것을 이유로 공갈과 명예훼손의 역고소를 당하는 데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에 계속 사과하며 자퇴하겠다고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자신이 이전에 했던 사과는 공갈·협박에 의한 것으로 ‘위장’된다.

이것은 최근 점차 시장화되고 있는 변호사업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가해자 변호인들은 때로는 ‘억지 고소’들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의 건수를 늘리고, 역고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면서, 그것들을 ‘성공사례’라 칭하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 동정론, 최협의설 등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가 강고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여 집행유예로, 선고유예로, 기소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사과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니 피해자에게 일단 사과하지 말라”¹⁷는 소위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 되어 버린다. 지난 10년간 성폭력 고소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기소율과 구속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¹⁸ 성폭력 고소인이 많아졌다는 것은 피고소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가해자들의 보복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럼 보수적인 해석과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에서 ‘틈새 시장’으로서 확장되고 있다(김보화, 2018).

17 2018년 3월 4일자, 한겨레 신문, “일단 사과하지 마?... 기자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 상담기”,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11.html#csidx590f0f221768016a3f83eabe760805f

18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에 인구 10만 명 당 29.1건이었는데 2016년 56.8건으로 늘어나, 10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대검찰청, 2017). 이는 성폭력 사건 발생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반면 2016년 『경찰범죄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강간의 불구속율은 91.2%에 이르고, 불기소율은 47.4%로 절반에 가까워(경찰청, 2017), 대중의 높아지는 감수성에 비해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폭력역고소가 위협되고 실현되는 조건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담일지에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무고 경험은 위의 판례와 달리 허위사실도 없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에도 무고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D상담소, 사례11>에서 피해자는 학원 선생에게 성폭력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이후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 받은 것과 남자친구가 항의한 내용 등에 대해 검사는 “기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무고를 의심했다.

성폭력역고소 중에서 무고죄는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가해자로부터 고소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불기소처분시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두 사람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현격히 다른 특성이 많음에도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응시하고자하는 전문분야에 권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으로 무고를 의심하는 상황은 수사 담당자들이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며, 피해 시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야 할 뿐 아니라, 사력을 다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쳐야 한다는, 소위 ‘성폭력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생각하는 “기본 상식”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와 피해 직후 태도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D상담소, 사례82>의 경우 무고로 고소된 후 거짓말탐지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와 곤란하게 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46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불리한 검사결과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정황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판단하는 수사관에게 이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다.

물론 수사관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도 될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가해자도 이 조사를 받았는지, 피해자가 해당검사에 적합한 심신상태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검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염려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한국여성의전화, 2017), 이러한 심리상태로 인해 불리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CCTV 등의 효력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다룰 때도 의심받는다.

준강간피해 후 고소했지만 가해자와 좋게 나누었던 카톡 내용과 술이 취한 것 같지 않게 나온 CCTV 화면 때문인지 검사가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했다.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면 양형기준에 참고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썼다. <D상담소, 사례165>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나고, 무고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CCTV에서 저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당시 가해자보다 내가 많이 취해있어 가해자의 진술이 CCTV 내용과 더 일치했다. 그래서 검사가 저의 진술을 의심하게 된 것 같다. <D상담소, 사례214>

<D상담소, 사례165>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CCTV에서 “취한 것 같지 않게” 나온 것을 무고 인지의 이유로 삼았는데, 본인은 술에 취했으나 타인이 보기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는 ‘블랙아웃(Black-out)’이라고 불리며, 만취 중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먼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이윤정 외, 2017). 블랙아웃은 대학생의 50.3%가 1년에 2회 경험하였고, 26.0%가 6개월에 2회 경험하였다(김광환 외, 2011)고 보고될 만큼 광범위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하지 않았으면서 취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술에 취한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검사의 오해와 더 나아가 합의 종용은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반면 <D상담소, 사례214>에서 검사는 CCTV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가해자보

다 많이 취해 있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있게 보았다. 통상 술에 덜 취한 사람의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검사는 가해자가 어떻게 취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였는지를 조사하기보다 CCTV와 진술이 더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신뢰하고 있다. 또한 CCTV라는 증거자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CCTV는 「형사소송법」 제312조¹⁹,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²⁰에 의해 비진술증거로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효력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들의 경우 피해 당시의 녹화물이 아닌 피해 전, 후 CCTV에 보이는 뚜렷하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무고를 인지하는 것은 성폭력이 폭행·협박 없이 술을 먹은 상태나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모텔에 함께 간 것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와 같이 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 19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 20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②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들처럼 적극적인 증명보다는 수사관의 통념과 의심에 의한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가 인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에서 마련한 무고 기소의 요건은 ‘철저한 수사의 완료’, ‘수사결과에 기반한 증거제시’, ‘피해자 행동 및 반응으로 무고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이고, 이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허민숙, 2017). 그러나 위 사례들처럼 검사에게 무고로 인지되거나 기소되는 피해자들은 거짓말탐지조사, 술에 취한 정도, CCTV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위협받고 무고를 의심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정확한 기억,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모순된 기대들이 존재함을 알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일 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관이 관련된 증거를 다루고 해석하는 방식은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수사관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와 피해자 책임론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범죄의 형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려는 가해자의 동기가 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담일지를 분석한 장다혜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합의 제안이 있었던 283건 중, 194건(64.7%)이 가해자 측에 의한 것이었다(장다혜, 2012).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합의나 보상, 때로는 여성단체에 대한 후원이 가해자에게 감형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에²¹ 여전히 가해자, 가해자 변호인이나 때로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나 형사고소 이전 보상의 요구는 가해자로부터 공갈, 협박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전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강간했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학과 특성상 계속 공동직업을 해야 해서 학교 교수님한테 말했더니 자퇴하겠다고 가해자가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D상담소, 사례167>

21 2017년 9월 14일자, 오마이뉴스,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 이권 반성 아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가 문자로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다. 가해자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 작은 손편지랑 〇〇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자 장난식으로 사과했고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상담소, 사례104>

위 사례들은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후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통상 성폭력피해를 입으면 바로 경찰 고소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서 성인의 경우 타인에 의한 피해가 69.5%(15,214건)로 보고되는 것에 반해,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서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4.6%, 2018년 상반기의 경우 11.5%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사고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즉, 모르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타인의 위치, 피해 이후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장, 데이트 관계, 학교 등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일 경우 고소 이후 불이익이나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아는 사이에서의 신고·고소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쉽게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다른 해결방안이나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전에 개인적 해결방안으로서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상담소, 사례104>의 언급처럼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사과에 포함되는 의미로서 요구되지만, 위 사례의 가해자들에게 사과와 금전적 보상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갈,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역고소하거나, 하겠다는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 수사관들이나 언론 등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합의에 대해 유독 경직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치료받다가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하자 돈을 보냈는데, 금액이 적다면서 돌려보내자 공갈,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몇 년 후 가해자가 공적인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폭로했고 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했다. 이후에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무고로 기소했다. <상담소, 사례23>

이 사례는 성폭력의 고소와 사법처리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가해자는 “돈을 보내는” 행위로 무마하려 했으나, 보상의 액수나 사과의 메시지가 피해자의 기대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오로지 “돈” 뿐이었다면, 피해자는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그 행위는 공갈, 협박으로 고소되고 유죄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후에 결심한 성폭력 고소는 도리어 무고 기소로 돌아왔다.

형사합의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피해자의 조건과 결합할 때 피해 회복의 내용은 사적 영역에 방치되고,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에서와 달리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장다혜, 2012). 그러나 위 사례처럼 형사고소 전에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먼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인식에서 기인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소위 ‘꽃뱀’이 아닌지에 대한 수사관의 의심에서 비롯된다.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추행을 했다. 가해자가 때릴까봐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못 했고 이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돈을 못 받는 것은 사장이고 당한 것은 나인데 경찰이 대뜸 돈을 못 받아서 신고하는 것 같다고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D상담소, 사례256>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 성폭력을 당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바로 고소는 못했지만, 이후에 고소했으나 성폭력은 불기소되었고,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였다. 재판 중에 검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물으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D상담소, 사례1>

위 사례의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었고,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불평등한 위치 속에서 “가해자가 때릴까봐”, “가해자가 무서워서” 바로 고소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돈을 못 받아서”, “돈을 주지 않아서” 고소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피해가 ‘객관적인 피해’로서 인정받기 위함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심 및 비난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분열된 인격의 통합성 회복을 위해서 고소를 결심하기도 하는 것이다(김셋별, 2009).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돈”이 개입되는 순간, 피해자의 피해경험은 위기를 맞게 되고, 국면이 전환되면서 왜 성폭력피해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닌지를 항변해야 하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또한 <D상담소, 사례1>에서 검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묻는데, 성폭력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성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무서움, 혼란,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알려졌을 때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것들까지를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성폭력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들을 무시한 채,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성폭력을 성기 삽입을 중심으로 한 ‘정조’와 ‘순결’에 대한 문제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편견,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가해자와 수사관의 인식은 어디에도 없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다운 피해자

에 대한 오해와 환상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보도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성폭력 무혐의와 무고를 혼동하거나 전체 무고 사건을 성폭력 무고 사건인 것처럼 설명하는 보도들은²²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28일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운동이 일어나 2018년 5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17,143명이 청원하였다. 이는 여전한 ‘꽃뱀’, ‘무고하게 고소당한 억울한 남성’에 대한 신화와 두려움이 무고 의심을 확장하며, 광범위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성폭력피해 해결이 무산되고 각종 역고소의 대응으로 힘든 과정에서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11년 전에 동기에게 강간을 당했고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학내 센터에 제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C상담소, 사례125>

위 사례의 피해자는 오래전에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학 내 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미투’관련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은 그간에 성폭력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말해도 정당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못했던 사건들의 임계치가 폭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의 말하기는 성폭력이 개인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적인 말하기를 사법절차를 이용한 보복으로 되갚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22 2013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914/57653677/1>; 2017년 12월 7일자, MBN 뉴스초점, “사람 죽이는 무고죄” 출처: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328>; 2016년 7월 28일자, 서울신문,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csidx622600ffdc5e7bb5752b3a2108228b>

23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운동,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이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수사매뉴얼은 법령형태가 아닌 검찰 내부 업무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III. 제언

1.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과 해석상의 과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폭력피해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 못하거나, 오히려 역고소 등의 공격을 받는 등 성폭력피해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들이 미비하거나, 법이 있어도 해석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험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가 계속되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관련 법이 제·개정 되어야 하는 지점들과 해석상의 개선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

(1)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미투’를 언급한 사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 성폭력이거나 어릴 때의 피해여서 어떤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피해들이다. 또한 가해자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이거나, 대학 교수, 선생님 등이어서 불이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 피해도 많았다. 피해 시기도 최근에는 있었던 피해부터 최대 53년 전에 입은 피해까지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법적 해결을 바랐지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²⁴로 인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과 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관한특례)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 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생에 걸쳐 재해석되는 경험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화하고 해결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방금 입은 피해라도 신고·고소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면 할 것이고, 50년 전의 피해라도 여전히 신고·고소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피해의 유형들이 고소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24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이병태(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329, 1202쪽 참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은 현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중에 먼저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실질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부터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경우 업무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업무·고용관계의 중단 시부터 시효를 계산하거나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신고운, 2018).

(2) 최협의설의 폐지

성폭력 발생의 판단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저항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2017년 4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강간의 법적 정의를 재규정한 SB 217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개정안은 주정부 법의 강간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저항했음을 증명하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한다. 법안을 발의한 켈레이(Delores Kelley) 상원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일이 성폭력임을 인정받기 위해, 또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격렬히 저항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말했다²⁵. 범죄의 피해자임을 인정받아 사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죽음을 각오한 채 저항하거나, 또는 살아남는 것을 택하려거든 사법적 정의를 포기해야 했던 위험한 강간법이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 평가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저항을 요구하는 현재의 성폭력 관련 법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성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특히 격렬한 신체적 저항은 성폭력 미수의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만, 폭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 등이 피해자를 더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Wong & Balemba, 2018). 이런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 것²⁶과, 공격을 당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생존에 집중할 것, 그리고 맞서 싸우지 않고 공격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⁷. 따라서 현재 피해자 저항 여부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타진하고 있는 최협의설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5 2017년 4월 19일자, Caldwell, Kayla, “Maryland Finally Amends Dangerous Sexual Assault Legislation”, 출처: <https://www.entitymag.com/maryland-finally-amends-dangerous-rape-law/>

26 University of Oklahoma, “Facts about sexual assault”, 출처: <http://www.ou.edu/oupd/trust-your-instincts.pdf>

27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Education Statement”, <https://www.csuci.edu/campuslife/student-conduct/sexual-violence-prevention.pdf>

(3)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동의를 요건으로 법을 제·개정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성범죄 구성요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몬타나 주는 2017년 SB 26 개정을 통해 강간의 성립요건을 동의의 결여(lack of consent)로 새롭게 규정하고, 피해자가 폭력적으로 공격당했음을 기소요건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하였다²⁸. 피해자가 폭력에 의해 강요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말과 행동을 통한 비동의 표현(an expression of lack of consent)만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SB 29에 따르면, 동의는 자유로운 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말과 명백한 행동을 의미한다²⁹. 독일 역시, 2016년 6월 「형법」 제177조(Section 177 of the German Criminal Code)의 강간죄 구성요건의 변화를 개정 법률에 반영하였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강압(coercion)이 있었음을 요구했던 조항을 구성요건에서 제외하고, “No”라는 의사표시만으로 동의의 결여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⁰. 스웨덴에서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성범죄 법률이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³¹. 스웨덴의 「성관계 동의법」(sexual consent legislation)은 성관계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폭력과 위협이 수반되었는가의 여부를 성폭력가해자의 기소요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또한, 부주의 강간(negligent rape) 및 부주의 성학대(negligent sexual abuse)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상대가 성관계 및 성접촉에 자발적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게을리(태만)하여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 최장 4년 형에 처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상대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는 변명은 이 조항에 의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의 저항을 증거로 요구했던 기존의 강간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은 그간 피해자들이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두려움에 압도되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거나, 또는 적절하게 저항하지 못했거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으나 가해자에 의해 무시되고 제압되었던 것들이 동의로 간주되었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다(Diehl, 2015 : 504).

피해자 동의의 결여를 강간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 간의 적극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27개 대학에 재학 중인 150,000명의 여대생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의 학생들은 원하지 않았던 성접촉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

28 Montana Legislature(2017), SENATE BILL NO. 26, 출처: <https://leg.mt.gov/bills/2017/billhtml/SB0026.htm>

29 Montana Legislature(2017), SENATE BILL NO. 29, 출처: <http://leg.mt.gov/bills/2017/billhtml/SB0029.htm>

30 2016년 7월 7일자, BBC, “Germany rape law: ‘No means No’ law passed”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726095>

3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Consent—basic requirement of new sexual offence legislation”, 출처: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4/consent—the-basic-requirement-of-new-sexual-offence-legislation/>

났다. 그들은 강요와 위협, 그리고 음주 및 약물에 취해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³². 이처럼 광범위한 규모의 피해사실과 캠퍼스 내 성폭력 현황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필요로 하였고, 캘리포니아는 SB 967 제정³³으로 교내 성폭력 관련 정책의 주요 조치로 ‘적극적 동의’를 활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No means No’, 즉 ‘여성이 싫다’고 하는 것은 곧이 곧대로 ‘싫다’라는 것임을 강조하는 슬로건이 어느 일면 저항과 거절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약물에 취하거나 잠든 상황은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적극적 동의는 성적 관계에 참여하는 각 일방이 적극적, 의식적, 자발적 동의를 하였는지를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의와 저항의 결여, 그리고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동의는 성관계 중이라도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서라도 철회될 수 있고, 이전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미래의 성적 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³⁴.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안(김수민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14982),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최경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3099) 등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학자,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지난 2018년 3월, 한국정부에 대하여 UN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폭력역고소는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따라서 그간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와 함께 아래와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의 4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

32 2015년 10월 13일자, The Washington Post, “Why we made ‘Yes Means Yes’ California law”,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in-theory/wp/2015/10/13/why-we-made-yes-means-yes-california-law/?utm_term=.ad90a7a0f524

33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2014), “SB-967 Student safety: sexual assault”, 출처: 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967

34 California SB 967 § 67386(a)(1)

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성폭력 역고소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수사관은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적 의도가 의심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다.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의 경우 특히 소송제기자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론화된 사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박선영, 200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 및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성폭력피해 진술의 진실성 또는 신빙성 판단 기준을 강간 등의 유죄입증을 위한 판단보다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적시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불기소 내지 무죄판단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의 진실성 판단과 분리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기소 내지 무죄판결 이후 성폭력피해를 주장한 이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의 남용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시 무고 인지를 원칙으로 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다(장임다혜, 2018).

또한 고소권 남용의 범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은 상대에게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피할 목적, 협박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 이념의 고려와 이익형량에 의한 고려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고소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형사소송규칙」에 담거나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소 남용은 대외적 효력으로서 국민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에 대한 근거가 있는 이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규칙 내에 포섭할 수 있다(김혜경, 2017).

(5)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2018년 3월 8일,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중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수사재판 담당자들에게 어떤 지침 등을 통해 공유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적 개선안들이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부 지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누적된 여성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의 사회적 설득 과정이 요구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처럼 피해자나 주변인이 성폭력 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판례들에서는 피해자가 교수의 성폭력을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무죄를 판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성폭력가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2138 판결]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성담론을 공론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억지소송’은 또 다른 피해를 확장하므로 부당제소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부당제소에 대해 법원은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취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판결 1996.5.10. 선고 95다45897 판결; 1994.9.9. 선고 93다50116 판결]”고 보고 있다(박선영, 2007). 따라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행위가 알려졌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기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해야 한다.

2005년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412)은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1항,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 3항,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시에 개정되지 못했지만, 현재의 ‘미투운동’의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배상균, 2018).

더불어 현재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가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공론화로 인한 명예훼손 역고소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재판 담당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성폭력 관련 법 해석과 집행에서의 과제

(1)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 제고

사건수사에서 판결에 이르는 사건처리의 전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변화가 요청된다. 피해자의 장애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는 법체계 하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정도는 범죄 성립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놓인다. 또한 장애인성폭력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에서 그러하듯 강제력과 저항의 입증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인 피해자의 성적 경험을 가해자의 가시적인 강제력 여부나 정도, 피해자 저항의 정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의사, 피해자의 장애 종류나 정도 등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담일지의 사례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성폭력은 단지 물리적 강제력이나 피해자의 중한 장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가 반복되는 여러 사례에서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약하거나 가시적이지 않고, 피해자는 ‘장애가 심해 보이지도’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을 사랑, 성관계로, 착취를 친밀성으로 이해하게 된 피해자의 ‘길들여짐’은 가해자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생애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가해자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성적 경험이 갖는 성폭력으로서의 성격은 피해자의 장애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 그러한 조건들을 가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비로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 처벌 가능성의 제고

피해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인 성폭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제대로 신고 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이다. 어떤 범죄 피해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신고가 범죄자 처벌로 이어질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깊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자는 모두 29,289명이다. 이 중 11,401명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38.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재판에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성범죄는 4대 강력(흉악)범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소율(살인 74.8%, 강도 62.1%, 방화 45.7%)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의 죄로 1심 재판을 받은 피의자 가운데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비율은 22.6%에 그치고 있다. 항소율은 49.0%에 이르고 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은 22.1%에 이르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성폭력에 대한 낮은 신고율은 성폭력을 신고한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성폭력을 신고한 자, 가해자를 고소한 자가 도리어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사회, 신고된 성폭력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신고되지 않고, 더욱 과감해진 방식으로 지속된다. 언론에 보도된 특정 범죄에 대한 본보기 식의 높은 유죄 선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성폭력피해를 근절시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성적 침해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가해자 면책의 요건을 제거하는 개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연대책임 의식의 제고

1) 공동체 · 조직 내 자율규제

성폭력의 법적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양한 관계, 성폭력의 유형, 기간, 구성요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 공동체 내, 직장 내 자율적 규제 및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이 명문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직장내 대학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고, 법적 용어로 강간과 강제추행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차별과 혐오 언저리에 있는 희롱과 업무상 차별들을 겪어내야 했다. 이러한 90년대 정서에서 성희롱 관련 규율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보다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화를 바꾸고 개선방향을 고민하기를 바라며, 당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족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성희롱의 사건처리와 예방지침을 명시하고 각 기관과 기업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³⁵. 이것은 조직내 성폭력이 ‘괴물화’된 가해자 개인과 ‘불쌍한’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조직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정들은 점차 강하게 제도화되었지만, 그에 비해 조직은 너무 불완전하고, 감수성의 격차는 크며, 여전히 생각보다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회사 내에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고충상담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많았고, 나이, 직급, 고용형태, 성별이 주는 중층적 권력 관계는 피해자의 말문을 막는 효과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군다나 법적 고용관계가 아닌 각종 ○○계의 경우 더 오랫동안 성폭력이 은폐되고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정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공공기관, 유관기관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관리하고,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동체의 경우에도 신청 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직 내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건처리 방법과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건지원자나 실무처리절차 진행자 워크숍도 필요한데, 그 내용에는 공공적 해결의 위상과 한계, 피해자와의 파트너십, 가해자에 대한 교섭과 설득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 내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성폭력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장 등 조직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동체에서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내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뉴얼이 너무 촘촘해도, 너무 거칠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촘촘할 경우 ‘법률만능주의’처럼, 실무와 절차, 행정, 증거 등을 중심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 반면에 너무 거칠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이상 왜곡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조직과 공동체에서는 매뉴얼이나 실무적 완벽함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또한 사건처리를 시작할 때 피해자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나눔이 있어야 하고(공동체의 현재 역량, 사건해결의 목표·과정·소요시간·절차 등), 가해자 성찰 및 재발방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당자도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통에만 빠져있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역량 강화될 수

35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족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있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2) 언론과 인식의 변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8년 7월 2일부터 25일까지 안희정 재판 관련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TV조선·채널A·MBN 중편 3사의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병원기록, 안희정 측 증인들의 증언, 피해와 상관없는 사적 정보 등이 주요 제목으로 뽑히고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김언경, 2018). 이처럼 언론에 의한 무분별한 성폭력 보도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왔고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2014년 『성폭력 사건보도수첩』에 이어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현재 잘못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실천요강」³⁶을 통해서 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표현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혐의와 무죄, 무고는 각기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꽃뱀’, ‘무고’를 연상하게 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번 고정된 프레임과 인식은 바뀌기가 어려우며 피해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대중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기자협회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함께 발간한 관련 보도 지침들을 참고하여 젠더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종임(2018)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보도 방식은 국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앵커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고 한다. ‘미투운동’의 확산에 계기를 제공했던 하비 와인스타인 관련 인터뷰에서는 성폭력피해자였던 여배우들을 인터뷰 하는 과정이, 그리고 미투운동과 관련된 이슈를 논하는 자리에는 여성 진행자와 여성 패널이 등장한다. 2017년 10월 12일 CNN 뉴스에서는 여배우 캐서린 켄달(Katherine Kendall)이 출연해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입을 성폭력을 고백했다(Actress: Weinstein got naked, chased me). 이날 CNN 뉴스 인터뷰는 국내 언론에서 다루는 성폭력피해자 인터뷰 방식과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피해자인 여성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앵커는 성폭력피해를 입었던 당시의 상황에만 집중했다. 앵커는 피해자인 출연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백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과

36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한국기자협회정관”, 출처: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피해자는 편하게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설명하고, 가해자인 하비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받았던 고통스러운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론에서는 성폭력 피해경험이나 피해자를 다룰 때 해당 사건의 프레임, 보도 내용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피해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인의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피해자와 대중들에게 성폭력 경험을 말해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한국사회는 그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법 제·개정을 통해 성폭력을 분명한 사회적 범죄로 단죄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마련을 통한 국가적 개입의 배경에는 그 어떤 범죄 피해자보다도 차별과 편견에 가장 취약한, 그렇기에 가장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던 범죄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성폭력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나누며 오랜시간 투쟁해 온 한국사회의 반성폭력운동이 있다.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료 수집에도 기여하였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 축적된 자료는 부분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피해 및 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피해자 지원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원이라 할 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낸 성과와 기여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성폭력피해 상담일지 분석은 통계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추이와 추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하고도 일상적인 맥락에 대한 분석은 무자비한 폭행을 수반한 낯선 이에 의한 강간, 그리고 이에 맞서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라는 성폭력의 전형성을 해체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되는 위력 및 위계와 같은 무형의 폭력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손쉽게 속이고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취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책하기에 앞서 가해자의 치밀하게 계산된 가해수법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반인권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성폭력피해자를 비난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법을 배워왔던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며 세상에 폭로한 폭력과 침해의 역사는 남성중심적이고도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담론과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며 가해자를 면책하고, 범죄 지속의 자양분이 되어 왔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 성폭력은 성도착증에 시달리는 어느 한 개인의 병리적 행동만

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거나 분풀이할만한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 맥락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사회적 노력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분명히 해준다.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동의로 해석되고, 피해자의 저항이 성적 교감 내지는 흥분의 도구로 여겨지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행동에서 흠결을 찾아 범죄유발의 죄명으로 단죄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는 성차별적 담론 생산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두드러졌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통념에 기대어 성폭력 피해자다움을 갖추지 않은 것에 집중하거나 피해자 행동의 특징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범죄가 아님을 단정하려는 것,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혹독한 비난에 피해자를 내몰아온 사회적 공모의 역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무시가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피해자의 경험에 주목하며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답지 않음을 추궁하고 비난해 왔던 기존 통념과 관행, 피해자를 오랜 기간 길들이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고소와 같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가해 수법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폭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범죄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국가개입 및 문화적 인식개선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투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지와 연대의 물결이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성폭력운동은 침묵을 강요하는 그 권력과 억압이 얼마나 오랜기간 피해자를 침묵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려는 폭발적이고도 강력한 연대의 힘도 역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지속될수록, 성별위계를 되돌리고자 하는 오래되고 해묵은 가부장적 권력의 반격 역시 자행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류사에 지속되어 온 성차별과 편견, 여성에 대한 혐오로 점철된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성폭력 없는 세상을 단숨에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를 통해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울림을 확산하려는 노력, 문제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성평등에 이르는 가치 있는 정도(正道)이자, 성적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한국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는 ‘미투’가 말한 것은,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보통의 경험’이었는지를 확인시켜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반면 ‘미투’가 말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사회적 인식, 법과 언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

저항들을 무시해 온 것이 아닌지, '미투'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서야 특별한 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적 물음을 던져봐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17), 『2016년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권김현영(2018),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 - 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제25권 2호(통권 95호).
- 김가은 외(2018),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韓國公安行政學會報』, 제27권 2호(통권 71호).
- 김광환 외(2011), “일개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 일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2권 11호.
- 김보화(2011),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 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보화(2018),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여성학논집』, 제35집 2호.
- 김셋별(2009),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수아(2018), “미투운동보도와 연결의 윤리”, 『문학동네』, 제25권 2호(통권 95호).
- 김언경(2018),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토론회 자료집,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김정혜(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2017),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1호.
- 김효인(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 #○○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4호.
-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선영(2003), “성폭력 사실의 공론화와 명예훼손”, 『법조』, 제52권 7호.
- 박선영(2007),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명예훼손-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편,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 배상균(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9권 3호.
- 법원행정처 편(2017), 『2017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세도우핀즈(2016), 『SP-01 :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세도우핀즈.
- 신고운(2018), “소멸시효 특례”,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신준섭 외(201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충북지역 거주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7집.
- 여성가족부(2015),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외(2014),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여성가족부 · 한국기자협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여성가족부 외(2018), 『성폭력 · 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 한국기자협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영화진흥위원회(2018),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 윤희정 외(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공적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4호.
- 이나영(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간 복지동향』, 제234권.
-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병태(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 이원상(2018),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성범죄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 『法學論叢』, 제25권 2호.
- 이윤정 외(2017), “알코올사용장애자의 블랙아웃(Black-out)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제18권 2호.
- 이종임(2018), “해외 언론에 나타나는 미투 운동의 명암”, 『관훈저널』, 제60권 2호.
- 이지수(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집 1호.
- 장다혜(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임다혜(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전말”,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 의심에서 지지로』 포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국(2012),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 주승희(2018), “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해양경찰학회.
- 탁틴내일연구소(2017),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탁틴내일 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2018), 「2017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한국여성의전화(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한정숙(2018), “혁명사의 관점에서 본 미투운동”, 『문학동네』, 제25권 제2호(통권 95호).
- 허민숙(2017), ““너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 홍주현(2017),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ei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질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8호.
- Abbey, A. P. McAuslan, T. Zawacki, A. M. Clinton, and P. O. Buck(2001), “Attitudinal, Experiential, and Situational Predictor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8.
- Abbey, A. and P. McAuslan(2004),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Male College Students’ Perpetration of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5).
- Brison, Susan J. (2003), *Aftermath: Violence and the Remaking of a Self*,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픈’ 옮김, 인향출판사.
- Carr, J. L., and K. M. VanDeusen(2004), “Risk Factors for Male Sexual Aggression on College Campu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5).
- DeGue, S., and D. DiLillo(2005), “‘You Would If You Loved Me’: Toward an Improved Conceptual and Etiological Understanding of Nonphysical Male Sexual Coerc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4).
- DeGue, S., and D. DiLillo, and M. Scalora(2010), “Are All Perpetrators Alike? Comparing Risk Factors for Sexual

- Coercion and Aggression,”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2(4).
- Diehl, B.(2015), “Affirmative Consent in Sexual Assault: Prosecutors’ Duty,” *The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28.
- Forbes, G. B., L. E. Adams–Curtis, and K. B. White(2004), “First– and Second– Generation Measures of Sexism, Rape Myths and Related Beliefs, and Hostility Toward Women: Their Interrelationships and Association with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with Dating Aggression and Sexual Coercion,” *Violence Against Women*, 10(3).
- Goodman–Delahunty, J. and K. Graham(2011), “The influence of victim intoxication and victim attire on police responses to sexual assault,”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8(1).
- Herman, Judith L.(201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Rev. ed.)*,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BasicBooks.
- Jenkins, K.(2017), “Rape Myths and Domestic Abuse Myths as Hermeneutical Injustice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4(2).
- Locke, B. D., and J. R. Mahalik(2005), “Examining Masculinity Norms, Problem Drinking, and Athletic Involvement as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 Loh, C., C. A. Gidycz, T. R. Lobo, and R. Luthra(2005), “A Prospective Analysi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Risk Factors Related to Perpetrator Characteristic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0).
- MacKinnon, C.(1989), “Rape: On Coercion and Consent,”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hill, M. R. and A. Abbey(2008), “Does Alcohol Contribute to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6).
- Schuller, R. A. and A. Stewart(2000), “Police responses to sexual assault complaints: The role of perpetrator/complainant intoxic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4(5).
- Tirrell, Lynne(2005), “Language and Power,” Jagger A. M., I. M. Young(ed),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언어와 권력”, 『여성주의 철학』,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Blackwell Publishing.
- Vega, V. and N. M. Malamuth(2007), “Predicting Sexual Aggression: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ggressive Behavior*, 33(2).
- Warshaw, Robin(2015), *I never called it rape*,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역, 미디어 일다.
- Wong, J. S. and S. Balemba(2018), “The Effect of Victim Resistance on Rape Completion: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9(3).
- Zawacki, T., A. Abbey, P. O. Buck, P. McAuslan, and A. M. Clinton–Sherrod (2003), “Perpetrators of Alcohol–Involved Sexual Assaults: How Do They Differ from Other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Nonperpetrators?,” *Aggressive Behavior*, 29(4).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2014), “SB–967 Student safety: sexual assault”, 출처: 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967

Montana Legislature(2017), SENATE BILL NO. 26, 출처: <https://leg.mt.gov/bills/2017/billhtml/SB0026.htm>

Montana Legislature(2017), SENATE BILL NO. 29, 출처: <http://leg.mt.gov/bills/2017/billhtml/SB0029.htm>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201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KOR/CO/7.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8.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Education Statement”, <https://www.csuci.edu/campuslife/student-conduct/sexual-violence-prevention.pdf>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Consent—basic requirement of new sexual offence legislation”, 출처: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4/consent—the-basic-requirement-of-new-sexual-offence-legislation/>

University of Oklahoma, “Facts about sexual assault”, 출처: <http://www.ou.edu/oupd/trust-your-instincts.pdf>

2013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 “[토요판 커브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914/57653677/1>

2015년 10월 13일자, The Washington Post, “Why we made ‘Yes Means Yes’ California law”,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in-theory/wp/2015/10/13/why-we-made-yes-means-yes-california-law/?utm_term=.ad90a7a0f524

2016년 7월 7일자, BBC, “Germany rape law: ‘No means No’ law passed”,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726095>

2016년 7월 28일자, 서울신문,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csidx622600ffdc5e7bb5752b3a2108228b>

2017년 4월 19일자, Caldwell, Kayla, “Maryland Finally Amends Dangerous Sexual Assault Legislation”, 출처: <https://www.entitymag.com/maryland-finally-amends-dangerous-rape-law/>

2017년 9월 14일자, 오마이뉴스,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 이견 반성 아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7년 11월 19일자, 뉴시스, “한샘 피해 여성은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을 보냈나”,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7_0000151676

2017년 12월 7일자, MBN 뉴스초점, “사람 죽이는 무고죄”, 출처: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328>

2018년 3월 4일자, 한겨레신문, ““일단 사과하지 마?... 기자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 상담기”,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11.html#csidx590f0f221768016a3f83eabe760805f

2018년 3월 8일자, 뉴시스, “[일문일답] 정현백 장관 “사회구조적 변화 위해 직접 행동해야”,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8_0000246415&cID=10201&pID=10200

2018년 3월 15일자, 투데이신문, ““저도 당했어요 ‘미트’ 운동”...배달의민족 신춘문예, ‘미투희화회 구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6>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한국기자협회정관”, 출처: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발제 2

성폭력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간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과정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 성폭력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간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과정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1. 서론¹

1. 연구배경 및 내용

성폭력 사건 발생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통계로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구축하는 통계들이 있다.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은 성폭력범죄의 검거 및 재판 결과에 대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한다. 다만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통계는 수사기관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을 포함할 수 없고, 성질상 현행법에서 처벌가능한 범위 내의 사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제 여성들의 피해경험과 피해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성폭력 사건과 상담들은 새롭게 발생한 범죄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투운동’과 같이 성폭력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말하지 못하였던 성폭력피해의 발고가 증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신고와 검거 이후의 양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로 등록된 전국 170개의 성폭력상담소들(2018년 9월 기준)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피해횟수, 건수, 유형, 관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현장의 성폭력피해 지원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요약본이 공개되었고,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쓰여왔으나 원본의 자료가 활발하게 분석되거나 활용되지 못했다. 여성폭력 통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을 수집하는 체계나 통계 작성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전기택 외,

1 이 연구는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것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연구책임: 김보화, 공동연구: 허민숙, 김미순, 장주리)의 결과를 일부 요약, 수정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2008~2018.6) 성폭력상담의 구체적인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2012; 이인선 외, 2017)들이 있었고, 유의미한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집적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근거 정비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상담소의 현장 상황이 다소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실적 자료취합이 가능한 2008년~2018년 6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운영실적을 검토함으로써 성폭력피해 상담의 현황을 알아보고 2013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미투운동’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전후로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담건수, 상담방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특성, 상담내용, 피해연령, 피해유형, 가해자유형, 성폭력피해 지원내용 등에 대한 지난 10여년간의 성폭력피해 및 지원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공식 통계에서의 수치들과 실제 상담현장에서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성폭력피해자 지원방안 및 운영실적 보고체계와 내용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반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법적,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동(movement)’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원의 과정은 현재의 법과 제도, 상담소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법적 지원에서 성폭력억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연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도 일부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의료적, 법적으로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기 면접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도모하지만, 피해자지원 인력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아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FGI를 통해 성폭력피해 유형별, 지역별 성폭력 사건지원에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단순히 ‘정부의 대리 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아닌,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가로서 위치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자체 등과 더 강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상담소들은 지난해, ‘미투운동’을 경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폭력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해왔다. 대중과 언론은 성폭력피해자들의 폭로, 말하기의 주체와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정작 ‘미투 이후’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자했던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폭력상담소의 지원과정의 특징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지원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특히 ‘미투 이후’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 향후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하여 국내외적 요구와 수준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자들의 역량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제도 간의 간극을 드러내어 피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예산 마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지원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과정을 촘촘히 살펴보면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나 ‘해결’은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 지원자가 건네는 공감과 소통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며, 법과 제도가 성폭력피해자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분석

이 글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보고한 상담소 운영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지표 등을 활용하여 상담통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로서 매년 공개되었으나, 이는 원본 자료를 간략화하여 만들어진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 수치 및 추이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제공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원본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과 흐름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상담건수,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피해의 특성, 지원내용 등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지난 10년간의 성폭력피해와 지원현황 및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주요 성폭력 관련법 개정,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발생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만 운영실적의 항목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점 때문에 10년간의 추이를 추적하기 어렵고, 세부항목의 구성상 한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성폭력피해 실태 및 피해자 지원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한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보다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 현황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²⁾의 기준에 맞춰 등록되고 여성가족부에 실적을 보고하는 170개 상담소를 기준으로 하였고(2018년 9월 기준), 1366, 해바라기지원센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2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인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지원현황 및 내용은 해당되지 않았다.

2) 성폭력피해 지원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원 유형별로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함으로써 최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및 문제점, 과거와 달라진 지점들, 개선되어야 할 절차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면접은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지역적 조건과 환경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좀 더 생생한 현장감과 현실적인 고민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표 1〉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번호	지역	활동기간
1	광주전라	14년
2	광주전라	13년
3	광주전라	17년
4	광주전라	13년
5	광주전라	4년
6	광주전라	8년
7	광주전라	12년
8	부산경남	17년
9	부산경남	1년
10	부산경남	2년
11	부산경남	14년
12	부산경남	17년
13	충청	13년
14	서울경기	8년
15	서울경기	11년
16	서울경기	3년
17	서울경기	15년
18	서울경기	9년
19	서울경기	8년
20	서울경기	15년
21	서울경기	8년
22	장애권역	8년
23	장애권역	17년

II. 2008년~2018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추이

1. 일반현황: 개소 수 및 종사자 수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성폭력상담소의 개소 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개소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2010년에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47개소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연 170개소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을 받는 상담소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 연도별 성폭력상담소 개소 수 및 국비지원 비율

연도	개소 수	국비지원 개소 수	국비지원 비율	단위: 개소 %
2008	196	81	41.3	
2009	199	87	43.7	
2010	152	87	57.2	
2011	163	87	53.4	
2012	172	87	50.6	
2013	169	92	54.4	
2014	154	96	62.3	
2015	159	100	62.9	
2016	173	104	60.1	
2017	167	104	62.3	
2018(9월 기준)	170	104	61.2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비지원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실적이 우수한 상담소이다. 단, 일부 지역 및 도서벽지 등에 3년 이상 운영 상담소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하에 1년 이상 운영된 상담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는 상담소의 지역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상담소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18년 9월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개소
신고 수* (장애인)	170 (25)	21 (4)	6 (1)	4 (1)	4 (2)	8 (1)	5 (2)	4 (1)	2	36 (3)	9	8 (1)	17 (2)	7 (2)	9 (1)	11 (2)	15 (1)	4 (1)	
예산지원** (장애인)	104 (22)	13 (4)	3	2	3 (2)	3 (1)	3 (2)	2 (1)	1	18 (3)	4	5 (1)	9 (2)	6 (2)	8 (1)	10 (2)	12 (1)	2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 자료

* 신고 수 : 휴지기관 제외

** 예산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예산 지원되는 상담소의 수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종사자 수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종사자 수 역시 상담소 개소 수 현황과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개소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 종사자 수도 증감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1,279명이 연간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상근직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4〉 연도별 종사자 수 현황

연도	종사자 수	상근직 (소장 및 상근 상담원)	비상근직 (시간제 또는 자 원봉사)	총 종사자 수 대 비 상근직 비율	단위: %
2008	1,447	594	853	41.1	
2009	1,476	578	898	39.2	
2010	1,156	454	702	39.3	
2011	1,093	466	627	42.6	
2012	1,286	546	740	42.5	
2013	1,226	489	737	39.9	
2014	1,001	417	584	41.7	
2015	1,169	530	639	45.3	
2016	1,379	549	830	39.8	
2017	1,465	577	888	39.4	
2018(상반기)	1,372	597	775	43.5	
평균	1,279	527	752	41.0	

2. 상담현황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상담건수의 추이는 〈표 5〉와 같다. 성폭력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히 성폭력 사건의 증가뿐 아니라 더이상 성폭력을 숨기지 않고 문제제기하려는 방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18년의 경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정도로 성폭력상담이 이루어진다면 2017년보다 약 15,000건 정도의 상담건수가 증가할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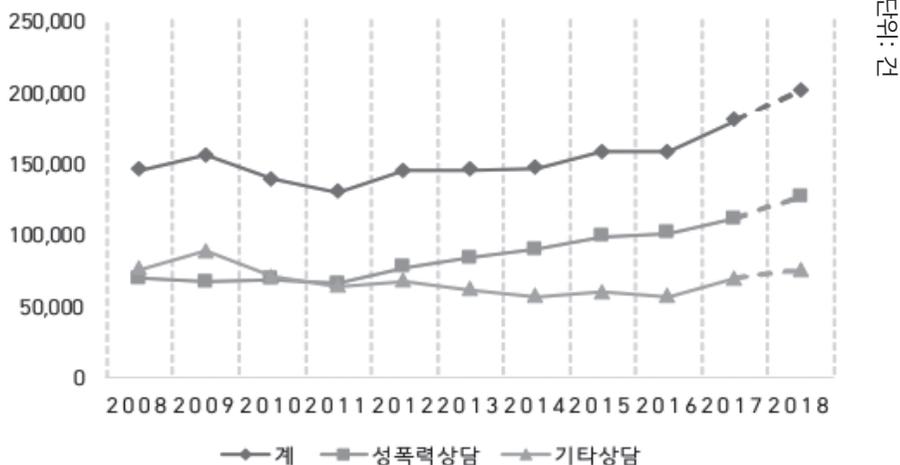
로 추정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추정치를 반영하여 연도별 상담건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연도별 상담건수

연도	상담건수 소계	성폭력상담건수	기타상담건수
2008	145,247	69,115	76,132
2009	155,902	67,221	88,681
2010	138,900	68,530	70,370
2011	129,983	65,922	64,061
2012	144,692	77,099	67,593
2013	145,446	83,981	61,465
2014	146,750	89,975	56,775
2015	158,188	98,729	59,459
2016	158,029	101,028	57,001
2017	180,572	111,123	69,449
2018(상반기)	100,347	63,056	37,291

단위: 건

[그림 1] 연도별 상담건수의 변화 추이



단위: 건

성폭력상담 및 전체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2017년부터는 급격한 증가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 및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2018년 초부터 더 활발해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지원자들의 FGI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상담과 사건지원 문의가 있었으나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밀려드는 상담과 지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따라서 상담건수의 증가는 ‘미투운동’이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피해 유형 및 피해자지원 내용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의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으며, 평균적으로 성추행, 강간, 사이버성폭력³, 스토킹, 음란전화⁴ 순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기타 제외). 강간 및 성추행피해가 많기는 하나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에 해당하는 피해 역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성폭력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연도별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

연도	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전화	기타	단위: 명 %
2008	27,636 (100.0)	10,256 (37.1)	10,432 (37.7)	-	-	-	6,948 (25.1)	
2009	33,659 (100.0)	14,137 (42.0)	13,452 (40.0)	-	-	-	6,070 (18.0)	
2010	39,299 (100.0)	16,449 (41.9)	16,109 (41.0)	-	-	-	6,741 (17.2)	
2011	33,749 (100.0)	14,331 (42.5)	12,964 (38.4)	758 (2.2)	653 (1.9)	590 (1.7)	4,453 (13.2)	
2012	30,642 (100.0)	11,768 (38.4)	12,386 (40.4)	754 (2.5)	777 (2.5)	847 (2.8)	4,110 (13.4)	
2013	31,323 (100.0)	11,832 (37.8)	13,128 (41.9)	769 (2.5)	793 (2.5)	535 (1.7)	4,266 (13.6)	
2014	31,764 (100.0)	11,146 (35.1)	13,443 (42.3)	763 (2.4)	944 (3.0)	822 (2.6)	4,646 (14.6)	
2015	34,489 (100.0)	12,788 (37.1)	14,735 (42.7)	849 (2.5)	1,696 (4.9)	872 (2.5)	3,549 (10.3)	
2016	33,044 (100.0)	11,420 (34.6)	15,539 (47.0)	688 (2.1)	1,435 (4.3)	387 (1.2)	3,575 (10.8)	
2017	29,695 (100.0)	10,064 (33.9)	11,931 (40.2)	759 (2.6)	1,491 (5.0)	544 (1.8)	4,906 (16.5)	

*2013년부터 유사강간이 강간과 함께 조사되기 시작했음

- 3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것, 또는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운영실적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2018년부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항목이 변경되었고, 여기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은 포함되지 않는다.
- 4 음란전화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란전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시 이것이 폭력이나 범죄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여타 매체를 통한 성적 괴롭힘 또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운영실적에서는 2018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의 현황은 <표 7>과 같다⁵.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과 강간 및 유사강간이 대다수의 피해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외의 피해들도 카메라등이용촬영⁶, 통신매체이용음란⁷, 스토킹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기타 제외).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율은 3.6%(517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4.9%(7,730건)로 증가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2006년 1.4%(195건)에서 2015년 3.7%(1,139건)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정부공식통계에서의 집계 모두에서 카메라나 온라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상담과 고소건수에 비해 관련 성폭력의 기술적 삭제까지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곳은 매우 적어 피해자지원의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여성가족부는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촬영 규제와 가해자 처벌, 예방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이행에 대해서는 담당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정부정책의 검토와 전문성 있는 지원기관 발굴, 기존 성폭력피해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표 7> 2018년 상반기 성폭력피해 인원 및 유형

계	강간 및 유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스토킹	기타(성희롱,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등)
16,621	5,977(36.0)	6,613(39.8)	603(3.6)	579(3.5)	337(2.0)	2,512(15.1)

단위: 표 %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피해자지원 내용은 <표 8>과 같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심리·정서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의 순으로 지원 빈도가 높았고(기타 제외),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는 심리·정서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전학지원의 순으로 지원 빈도가 높았다(기타 제외). 또한 피해자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10년간 1.8배 가량 증가하였다.

5 2018년부터 성폭력피해 유형의 조사항목이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기타로 변경되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표 8〉 연도별 피해자지원 내용

연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전학지원	기타	피해자 1인당 지원횟수
2008	66,293	40,803	10,416	3,773	638	-	10,663	2.4
2009	59,420	36,367	8,510	3,750	925	-	9,868	1.8
2010	74,102	41,941	13,205	5,419	1,350	-	12,187	1.9
2011	73,938	42,290	12,043	5,724	1,138	-	12,743	2.2
2012	82,914	45,519	14,713	5,118	1,639	-	15,925	2.7
2013	89,266	48,473	15,921	5,227	2,076	505	17,064	2.8
2014	90,584	46,414	15,944	5,652	890	111	21,573	2.9
2015	100,937	57,469	14,760	5,760	1,199	33	21,716	2.9
2016	113,979	65,178	16,614	6,326	1,747	295	23,819	3.5
2017	122,839	68,352	15,736	6,304	3,317	88	29,042	4.1
2018 (상반기)	69,510	39,916	10,573	2,876	2,121	105	13,919	4.4

단위: 회

4. 성폭력가해자 유형

2011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가해자유형은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 친족·배우자·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직장·학교 등의 공간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연도별 성폭력가해자 유형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계(중복)	31,768	30,875	30,785	32,834	34,641	31,860	30,275	16,806	
친족 및친 인척	(의)부모 형제	2,001	2,102	2,259	2,094	1,803	1,683	1,927	804
	4촌이내 혈족	1,174	1,137	1,286	885	893	755	860	660
	2촌이내 혈족	599	400	406	232	274	321	328	196
	기타	429	592	477	424	471	352	599	274
배우자	627	563	464	595	434	523	425	387	
애인	2,091	1,867	2,292	2,084	2,254	2,666	2,511	1,394	
직장관계자	3,366	3,765	3,909	4,292	4,377	4,163	4,195	2,870	
동네사람	3,280	2,349	2,569	3,088	3,065	2,323	2,078	1,220	
동급생선후배	4,472	4,612	4,352	5,051	5,672	4,305	4,881	2,330	

단위: 회

교사강사	604	902	792	693	693	838	795	660
종교인	208	529	323	250	190	193	259	168
복지시설근무자	126	276	172	179	128	84	102	52
서비스제공자	649	562	592	703	623	670	613	325
채팅상대자	2,056	1,788	1,261	1,660	1,543	1,432	1,611	916
모르는사람	5,485	4,521	4,451	5,067	6,490	6,635	4,420	1,927
기타	4,601	4,910	5,180	5,537	5,731	4,917	4,671	2,623

한편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연도별 비율은 <표 10>과 같다. 상담소 운영실적에서 가해자 유형 중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5.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서는 2016년 성폭력범죄 중 타인에 의한 성폭력을 68.2%로 제시하고 있어 상담소 운영실적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간극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은 친밀한 관계나 아는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이 많고, 이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나 처해있는 조건상 형사고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형사 고소했어도 인정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절차에 미처 닿지 못하거나, 절차 안에서 피해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피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2018년 ‘미투’, ‘미투운동’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어린 시절 주변인이나 가족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 공동체 등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피해 상담이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10> 성폭력가해자 유형 중 모르는 사람의 비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백분율	17.3	14.6	14.5	15.4	18.7	20.8	14.6	11.5

단위: %

5. 고소·고발 결과 및 형사고소 지원현황

고소·고발 결과 및 형사고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합의, 고소취하, 불기소, 기소로 세부항목을 나누어 조사하였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형사소송지원현황(수사단계, 기소·공판, 불기소·기소유예), 미신고, 미파악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연도별 고소·고발 결과

연도	계	합의	고소 취하	불기소	기소	기타	단위: 건
2011	12,209	934	267	600	3,392	7,016	
2012	12,235	1,339	375	452	5,024	5,045	
2013	13,793	1,039	293	787	5,471	6,203	
2014	17,511	762	134	1,280	6,125	9,210	
2015	17,657	1,104	233	699	5,629	9,992	
2016	15,711	658	458	922	5,062	8,611	
2017	20,321	1,043	899	1,019	5,353	12,007	

〈표 12〉 2018년 형사고소 지원현황

계	형사소송 지원				미신고	미파악	단위: 건
	소계	수사단계 (경찰·검찰)	기소·공판	불기소· 기소유예			
16,806	5,916	3,331	1,937	648	5,947	4,943	

고소·고발 결과 및 형사고소 지원현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불기소보다 기소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의 2016년 성폭력범죄자 처분현황(〈표 13〉)과는 차이를 보인다.

〈표 13〉 2016년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

계	기소	불기소	기타	단위: 명
27,248	11,401	13,176	2,671	

출처: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모든 피해자가 이를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12〉를 보면 5,916명의 피해자가 형사·사법적 절차를 진행한 반면 이와 비슷한 규모인 5,947명의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는 신고를 하더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가 법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우월적이거나 친밀한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고소가 어렵거나, 형사·사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 금전, 피로감 등을 고려한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 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이후에도 상담원의 지원과 함께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지원한 사건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 상담소의 지원여부를 알 수 없는 대검찰청의 자료에서는 여전히 기소보다 불기소가 많고 이것은 많은 성폭력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의 현황 및 개선점

1.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 지원과정의 특징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크게 심리·정서적 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 및 기관연계로 나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지원이 모두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피해자 지원의 방식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성별고정관념 및 왜곡된 성의식, 그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보호와 달리 성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가 처한 현실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담일지를 통해서 분석한 성폭력상담소 4개소에서의 피해자 지원은 지역 특성 및 상담소의 역사성에 따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적 특성과 함께 상담일지 분석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방법이 다양하다. 상담소에서의 대면상담에 국한하지 않고 SNS, 이메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고 있었고 장소도 찻집, 식당, 제과점, 공원 등 다양하였다. 이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울 때 지원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 동행지원이 많았다. 지역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병원, 법원, 변호사 사무실 등에 피해자와 동행하며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상담소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동행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가족 등 주변인들과도 지원자가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지원자는 형사·사법절차에 있는 사건지원에 있어서 해당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사건진행과정을 파악할 뿐 아니라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구두로 항의하기, 의견서 제출,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시정 요구를 하고 있었다.

넷째, 피해자의 특성에 기반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A상담소, 사례3>의 경우, 지원자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한 직후 추가로 면접상담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사 면담 과정에서 사건 진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법률용어의 생소함으로 알아듣지 못했다. 지원자는 피해자들이 변호사면담 과정에서 가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변호사 면담 직후 면접상담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변호사

가 안내한 사건의 쟁점, 법률용어, 사건진행 절차, 향후 법률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주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여 정보제공은 물론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B상담소, 사례13〉의 지원과정에서도 지원자가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뇌전증장애’를 갖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지원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조사 시에 피해자의 장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응급상황 대비를 해줄 것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지원자들은 지원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절차가 피해자를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었다.

다섯째, 지속지원과 법률지원 중점의 피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에서 지속지원의 경우는 법률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률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형사·민사·가사소송에 관한 절차상의 조력, 공판 모니터링, 의견서 작성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상담소에 주로 요구하는 지원도 고소 시 증거수집 방법, 고소 가능성 여부, 법적 절차,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무고 및 가해자 명예훼손 해당 여부, 형사·사법기관 및 성폭력 사건 대응방안, 불기소 및 재판 패소 이후 지원요구, 가해자 협박에 대한 대응 등 법률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들은 자문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거나, 혹은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여섯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공동대응하였다. 상담소들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개별상담소가 지원하기보다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하거나, 또는 지역별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미투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역이나 조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나 개별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경우 오전에는 A지역의 항의시위를, 오후에는 B지역의 항의시위를 함께 하는 등 조직적 연대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상담일지 분석대상인 성폭력상담소 4개소의 지원과정을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상담일지분석 상에서 드러난 성폭력상담소의 강점이 다른 성폭력상담소의 지원과정에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운영이 제도화와 함께 다소 위축되거나, 운동적 성격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김보연, 2006). 이러한 지적은 성폭력상담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2.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지원과정의 주된 문제점은 지원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지원체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수사기관, 해바라기센터, 국선변호사와 관련된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고, 일반법 적용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제도들도 지원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질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사관이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는지,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의 방향과 2차 피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D상담소, 사례90>은 “형사고소 하러 갔으나 남성피해자라 오픈된 공간에서 피해상황을 물었다, 왜 술을 마셨냐고도 했다”고 말하는데, 수사관은 남성의 성폭력피해를 사소화하여 대응하면서 피해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 <D상담소, 사례154>”,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가해자가 유부남이면 돈을 요구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혼여부, 학벌, 자녀유무 등 왜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수사관이 하는지 모르겠다. <C상담소, 사례120>”와 같은 사례들에서 수사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이 강간에 대한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며,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박지선 외, 2011). 따라서 성폭력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왜 가해자와 같이 술을 같이 마셨냐’고 하거나, ‘똑똑한 여성인데 왜 성폭력을 당하냐’고 추궁하는 행동들은 성폭력을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상담소, 사례161>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장소였던 차 안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해 폭력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맞아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성폭력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증명은 피해자가 성폭력 당시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수사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합의 제안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인식되기도 한다. 수사관이 주관적인 요구에 의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별일 아니

라는 태도로 합의 요구를 표명하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의문을 갖게 되고(신주호, 2010),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성폭력 인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이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수사관의 위치는 결코 동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미경, 2012). 때때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역고소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형사절차적 권리가 무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합의 중용에 불쾌감을 느끼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수사관에게 문제제기를 했을 시 혹시나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⁸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의 주체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됨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C상답소, 사례114〉은 검찰 조사과정 중 피해자가 개인의 사생활을 누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뒤 개인정보가 밝혀져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례이다. 〈D상답소, 사례275〉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회사 주소로 서류를 받고자 하였는데 검찰 민원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보내서 직장동료들에게 성폭력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례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 합의 요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성폭력피해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

상담일지에서는 수사관이 성폭력피해 유형 및 대상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B상답소, 사례1〉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혀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에 닦았으나 증거채취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상태를 파

8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악하는 것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C상답소, 사례6>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경찰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여 피해자에게 의심받는 기분을 느끼게 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사관이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비장애인인 <C상답소, 사례15>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거나 어리지 않는데 모델 가는 것이 정상이나”고 말한다. 이 사례는 지인에 의한 준강간으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정황, 피해정도, 피해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발생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C상답소, 사례52>는 남성피해자인데,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을 당시 “경찰이 이런 걸로 왜 왔지? 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고 호소한다. 이는 남성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의 『성폭력 피해대상별 지원 프로젝트 성인남성 성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남성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사건 및 피해는 여성·아동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나 남성성폭력피해는 ‘별 거 아니다’라며 가볍게 여기거나, ‘진정한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태도 등이며, 이는 ‘남성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에 의해 나타난다.

이처럼 수사관이 장애인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준강간, 남성성폭력피해 등 유형별 성폭력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들은 안전하고 배려받는 조사를 받기보다는 추가적인 심리적 피해를 느끼기도 한다.

2) 피해자 변호사 조력에서의 문제점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소극적 태도

아래 <B상답소, 사례1>은 지적장애인피해자 사건을 조력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지원자의 기록 부분이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변호사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선변호사는 수사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검찰 불기소로 피해자의 모든 항고를 원했으나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지원이 어렵고 처분이 내려졌으면 끝난 것이라고 한다. <B상답소, 사례1>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과 더불어 불기소처리 이후에라도 피해자 및 대리인이 불복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선정의 효력이 있음에도⁹, 위 사례의 변호사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선변호사의 출석권과 관련해서 국선변호사의 의견진술 기일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제외하고 출석규정은 없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의 법적 인정을 위해 조력받으려는 것인 만큼 국선변호사가 이유 없이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FGI-사례10>에서는 법률조력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변호사마다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가 저희쪽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국선변호사제도는 분명히 경찰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들마다 개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법원 단계에서 한다고 하고 누구는 경찰 동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느냐고 했더니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대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FGI-사례10>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¹⁰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고소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1회 이상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¹¹ 조력 시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거나, 국선변호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정보에 의지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 하지만 변호사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소송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부지기수예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피해자들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는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갔을 때

9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무부는 2014년 3월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11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만나주지를 않는 것은 좀 그렇다고 느끼는 것도 많은 거 같아요. <FGI-사례11>

피해자분들도 변호사님들한테, 특히 국선변호사님들한테 한 번 전화하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님한테 전화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대신 상담사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FGI-사례10>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국선변호사가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선변호사의 수임료가 적고, 또 이 금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서 부담감을 갖거나 위축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무용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국선변호사의 위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국선변호사와 피해자 모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숙지하고, 함께 소송 전략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행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였는데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피해자 국선변호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투운동’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¹².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지난 6월 성명을 발표하여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리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 증인진술 참여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에 불합리한 보수기준은 결국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¹³.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에 적합한 보수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면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수사·재판과정, 민사소송, 가사소송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또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될 경우에도 변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차이가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6).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12 2018년 8월 2일자, 한국일보, “성범죄 계속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푸대접’”, 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11695779294>

13 2018년 6월 25일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출처: <http://www.kwla.or.kr/sub0401/1515>

피해자와 상담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1인당 수임을 할 수 있는 소요액은 총 4백만원 한도에서 결정하고 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그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간 지원자 및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FGI에서 현장의 성폭력 사건 지원자들은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법률조력인에 대하여 여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소속된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의뢰인을 확보하기도 하고(FGI-사례14), 지원과정에서 무법으로 1심을 하고, 2심은 사선으로 돌리는 경우(FGI-사례15)도 발생하고 있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소속된 변호사 중 일부로 인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 성폭력 사건지원 변호업계의 시장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고민은 성폭력 사건 변호가 시장화되는 것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다. <FGI-사례14>는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거나, 주변에서 성폭력피해자 변호를 잘하는 곳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거나, 승소하기 위해 높은 수임료를 부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유도한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 즉 피해자에게 소송절차에서의 진행상황 및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금전적 부담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소송대리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다.

최근 가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투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고소, 폭로가 늘면서 성폭력과 관련된 ‘변호사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며¹⁴, 일부 법인들은 성범죄 가해자의 변론을 맡고 있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행위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FGI-사례6>은 연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적은 지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변호인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변호사는 성폭력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변호사의 가치와 양심에 따라 조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변호사들은 피해자지원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여 가해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기도 하는데, 지원자들은 피해자를 조력했던 변호사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마주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현행 제도에서 과거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조력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특히 피해자 전담 변호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피해지원자들은 변호사들이

14 2018년 9월 15일, 한겨레신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희가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96.html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를 전담으로 해주길 기대하면서도 변호사들도 경제적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 변호사로 탈바꿈하는 변호사를 지켜보면서 허탈감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FGI-사례7〉). 무료법률지원사업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아니더라도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모든 변호사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요구되며, 그것이 갖춰질 때 피해자가 신뢰와 안정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관기관 간 피해자지원 해석의 차이

(1) 해바라기센터¹⁵ 지원의 문제

2004년까지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은 민간주도형 성폭력상담소가 담당해왔다. 2004년부터 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도형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확장되었다. 해바라기센터는 대상별(아동, 지적장애, 모든 피해자), 기능별(위기형, 아동형, 통합형), 내용별(상담, 심리, 간호, 수사)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다.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고, 수사관이 파견되어 있어 바로 형사절차에 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센터 간 기능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고, 과도하게 기능화, 파편화되어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해바라기센터와 유사 피해자지원기관인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간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상담소가 연계를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을 알고 찾아갔을 시 센터별로 지원의 내용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확보나 초기 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고민 후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의료지원을 하지 않는다” 〈FGI-사례 14〉거나, “지속상담 지원범위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별로 내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FGI-사례11〉)” 등이 대표적이다.

〈FGI-사례17〉이 지원한 사례는 청소년 준강간 피해자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바라기센터에 진료를 연계하였으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진료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미성년자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

15 공식명칭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제시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다. 2004년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05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 2010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명칭을 달리 사용하였다. 2010년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통합지원센터는 기능에 따라 아동형, 위기형, 통합형으로 명칭이 다양하나 시민들에게 친숙하고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해바라기센터로 통칭하고 있다.

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러한 사건지원들과 관련한 내부지침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B상담소, 사례10>은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을 이용한 후 치료비청구서를 발급받고자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병원은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들일 수 있고 성폭력상담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훨씬 많으나 예외적 몇 가지 사례가 피해회복 과정에 있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평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지역이나 센터마다 차이가 있었다.

해바라기센터는 병원, 경찰, 여성가족부의 3자 협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직구성원도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 있어 각 직군별로 성폭력피해자를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의 사례들에서와 같이 기관별로 지원에 대한 해석, 유관기관과의 연계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된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해바라기센터와 일선 상담소들이 함께 협력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간 동일한 정보와 원칙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주거지원 문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정책¹⁶은 지원대상과 요건을 제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요건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가 있거나, 상해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시이고 살인, 강도,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서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까지를 포함하고 있다.¹⁷

<B상담소, 사례11>에서 지원자는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주거지원을 알아보는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시 피해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례의 경우 장애인 피해자로 긴급주거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어떤 근거로 담당자가 피해 장소가 피해자집이 아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018년 3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내용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표준매뉴얼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16 법무부(2010), 법무부공고 제2010-266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출처: 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11125

17 2018년 3월 22일자, 국토매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출처 : <http://m.pmnnews.co.kr/55984>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피해자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장애인 피해지원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주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조력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정보가 차단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송전반에서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FGI-사례8>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건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나 알 수 없고,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과정을 문의해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특성이 소송절차에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도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때때로 피해자는 법적절차 안내와 관련된 정보를 문자 또는 유선으로 전달받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문자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절차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재판과정 외에도 지원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관련기관에 심리평가, 사건절차에 필요한 진단서, 의료기록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지적장애인 피해자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사건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한정하여 지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지원자의 어려움

1) 성폭력상담소 운영의 어려움

(1)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위해 지원자는 성인지감수성은 물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 직접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피해특성별 이해와 행정적 능력 등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훈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GI-사례 11>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자들 간에도 지역별 임금격차가 적지 않으며, 이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어 결과적으로 업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반면

〈FGI-사례5〉은 “이직의 이유가 비단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상담뿐 아니라 캠페인, 실무 등 여러 활동을 하는 지원자들에게 사회운동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대한 목표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2) 상담소 정체성에 대한 고민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는 세분화되어 있고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이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기능화, 세분화되고 있는 지원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상담소현장의 지원활동에 독자성이 드러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소비되고 있거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FGI-사례6〉은 최근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시민들에게 지원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366, 해바라기센터만을 안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366에서 연계받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결국 상담소인데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홍보가 필요하고 대응에는 일선 상담소들과의 협력체계,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각자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비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상담소 운영의 실적화

성폭력피해자 지원자들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문제제기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추진실적 보고 양식에는 매해 전년도보다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각 지자체에서는 상담소들에게 실적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 발생의 규모는 예측되기 어렵고 피해 지원의 정도를 양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마다 지역별 차이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실적화하여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편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지원뿐 아니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수행하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의 고유활동에 대해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GI-사례6〉). 이것은 성폭력상담소들이 피해자지원뿐 아니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도 주 업무로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자체와 상담소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임이 주지될 필요가 있다.

(4) 성폭력피해자 지원자원의 편차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가, 심리상담가, 의료기관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의 지역별 편차가 커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을 갖춘 변호사군이 부족하여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FGI-사례6〉).

이는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및 상담, 피해자의 상태 파악을 위한 심리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FGI-사례16〉은 “기존에 연계해오던 곳의 경우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피해자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기관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설사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문제 역시 보고되고 있다(〈FGI-사례5〉).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18)에 따르면, 의료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클리닉도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박사수료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 유관기관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피해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이중고가 예견된다. 따라서 학위의 기준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상담 경험 및 여성폭력피해, 젠더감수성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지원과정에서의 소진과 대리외상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피해의 유형, 피해자 주변의 자원, 피해자의 피해경험과 해석에 따라 지원의 방향을 결정한다. 점차적으로 피해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원자들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파생된 민사, 역고소, 폭력사건, 행정소송, 징계절차 등 사법·행정지원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조력하고, 사건대응 및 의식 변화를 위한 토론회, 검찰·경찰·재판부의 기관장 면담 추진, 법적 절차와 연관된 경찰, 국선변호사 등과의 조력 방안 논의, 피해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연계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미투운동’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들과 관련하여 지원자들은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지원자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원보수교육, 자체

교육,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보내오는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FGI-사례10>은 “지역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여 대도시로 나와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정된 인력 속에서 추가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소장들은 지원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한계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원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원과정에 대한 수퍼비전과 지원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리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FGI-사례15>는 “대리외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없었을 때는 업무로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대리외상을 경험한 후에는 이것이 지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겪게 되는 소진, 대리외상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원자의 소진예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등 모든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연간 15명만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2018년 기준) 더 많은 지원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원인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자들의 소진예방 등을 위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IV. ‘미투 이후’¹⁸ 피해자지원의 변화와 개선방안¹⁹

1.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구성

2018년 2월, ‘미투운동’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무회의에서의 판단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3월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이하 범정부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범정부협의회 실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하 범정부 추진점검단)을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18 이 장에서 ‘미투 이후’란 성폭력피해를 입은 검사가 피해를 폭로한 2018년 1월 29일 이후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정부합동 대책회의 등에서 구체적 지원체계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한 이’ 성폭력 사건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합동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범정부협의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일부의 경우 2017년 11월의 관계부처 합동 근절대책 발표까지를 포함하였다.

19 이 장에서 분석대상이 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및 ‘범정부협의회’의 활동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뉴스’의 ‘범정부협의회 대책 및 이행상황 브리핑 자료’ 및 각종 회의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고.

범정부협의회의 역할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대책들을 종합화·체계화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관계부처 차관²⁰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를 위원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1월까지 4회차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및 ‘디지털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분야별 근절대책과 이행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범정부협의회의 실무지원체계인 범정부 추진점검단의 설치·운영 기준을 국무총리훈령²¹으로 마련하여 분야별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점검은 물론 보완대책의 마련과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범정부 추진점검단의 설치는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²²로 여성가족부에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하여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²³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미투 이후’ 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분석

‘미투 이후’ 성폭력 관련 대책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초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윤자영(2018)은 ‘미투 이후’ 범정부 대책을 ① 특별점검 및 실태조사, ② 피해자 신고 및 상담지원, ③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④ 가해자 제재 및 처벌강화, ⑤ 예방 및 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의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 정부 대책 흐름도 크게는 피해자권리보장 확대, 가해자 처벌 및 형량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법 규정의 재정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방지 대책이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부처의 대응 마련 정도로 그쳤던 것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동기가 있었던 점, 그리고 분야별 대책에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한 전방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 성희롱·성폭력 발생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 것,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등은 기존과의 차이점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제반의 대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원과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정부 대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을 말한다.

21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713호, 2018. 3. 30. 제정]

22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설치)

23 관계부처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인권위원회, 경찰청을 의미한다.

1)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컨설팅

정부는 2017년 ‘한○ 성폭력’ 사건 이후 직장 및 공공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장치 강화를 위해 성희롱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투운동’이 더욱 활발해지자 관련 부처들은 3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특별신고센터를 열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도 받기 시작하였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는 분야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여가부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범정부협의회는 각 분야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지원체계와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법률·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권역별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하고, 1366을 통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를 계획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고자 했다.

여가부의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였는데 당초 100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가 비공공부문의 신고들도 접수됨에 따라 12월까지로 연장하였다.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우편, 온라인, 유선, 내방을 통해 신고하면 접수를 받아 법률, 상담, 노무 등 외부전문가와 사례회의를 통해서 사건처리판정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 거주지 근처의 피해자지원 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형사·사법·행정적 사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겪을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지원의 지속성을 위해서 6개월 이내 처리결과를 추적조사하고, 사안이 심각하거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사례관리를 통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²⁴

이처럼 범정부협의회는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조직이 상시적으로 성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상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뒤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직 내 규정과 지침이 보완되어야 한다. 더불어 범정부협의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상시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고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부분에서 발췌, 출처: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31&mu_lang=CDIDX00022&srch_menu_nix=c64PWTP8&srch_mu_site=CDIDX00002

하는데 일시적 정책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여가부도 최근 ‘스쿨미투 종합대책’으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직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범정부대책으로서 컨설팅의 내용은 무엇인지, 컨설턴트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투’ 정국에서의 공공기관·직장 내 실태조사는 피해 실태를 고발하는 정도로 활용하여 아쉬운 점이 남는다.

2)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법정부 종합대책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첫째,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장구를 개설하여 상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 피해자는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긴급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타 분야에서도 근무지 배치전환, 휴가사용, 행위자와 즉시 분리조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자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미투피해자 보호관’ 915명(지방청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청수사팀장 등)을 지정·운영하여 수사종결 시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올해 47명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며, 피해자지원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성폭력상담소의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셋째,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강화 조치로 경찰청은 여성전담경찰관 배치를 원칙으로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명조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여가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의료계의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액 등 제재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입힌 교육기관 종사자 및 가해자에 대해서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처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여 피해 신고자에 대한 체

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성폭력방지법」 제8조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조항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적극적 제재를 검토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미투 이후’ 말하기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의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들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지원과 관련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 역시 발견된다. 우선 각 분야의 대책들이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나 실효성 확대에 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만을 추진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수행되고 있는 제도나 체계를 중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분야별(부처별)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 분야별(부처별) 특성이 드러나면서도 다른 부처들과 통일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범정부의 대응에서 추진력 있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실태점검,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조직 내 사건처리 안내서 제작·배포, 분야별 특성화된 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 주체의 협조를 끌어내기에 용이하며 저항감이 적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윤자영, 2018)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이러한 대책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대응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분이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해당 부처 및 조직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는 관할 부처가 그동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책 수립에 미온적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교육인력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제언 및 결론

1. 성폭력피해 수사과정: 수사담당자의 역할 정립 및 인식 제고

- 1) 수사담당자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²⁵과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²⁶의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 2) 수사기관 및 수사관(해바라기센터 포함)은 피해자를 대면하는 순간부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나 지원기관의 조력 등에서 권리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 4) 성폭력가해자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 지위 등이 높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우려하게 된다. 경찰청훈령 제903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이거나, 피의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일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 감독인인 때 제척(제8조)할 수 있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기피(제8조의 2)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성폭력 수사 진행에 앞서 담당 수사관이 기피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5) 성폭력피해자를 수사하는 전담 경찰관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젠더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정기적 교육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의 개선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

25 법무부훈령 제985호

26 경찰청훈령 제775호

성에 관한 사항,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에 관한 사항,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도입된지 6개월 이후,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성폭력상담소(2013)에서 진행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이후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국선변호사 교육 실시

법무부는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해서는 매해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2014)을 제작하여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내용과 같이 국선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성폭력피해 특성을 이해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담지원기관과 국선변호사 간 협력 필요

변호사와 피해자지원기관은 각각의 전문적 영역을 다루지만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에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 및 여가부는 국선변호사와 피해자지원기관 간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피해자 권리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 필요

모든 변호사들은 성폭력피해자가 방문했을 시 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립된 제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전까지는 법무부 차원에서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여 변호사가 상담 시에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2) 무료법률지원사업

(1)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피해자가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2)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수행처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위촉된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고소인의 변호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구조사업인지 모르고 선임되었어도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4). 또한 수행 변호사로서 의무 위배로 인해 2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호사를 해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후 해당 변호사가 기 수령한 수임료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변호사 및 피해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지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3)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들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는 가족, 주변인들에게도 역고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무료법률지원의 범위를 주변인들에 대한 역고소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 윤리규정 강화 및 제재규정 마련

- (1) 성폭력 사건 변호의 시장화와 변호사의 도덕적 해이에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자정적 노력이 요구된다.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지방변호사회 내부지침」,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서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⁷
- (2) 「변호사법」 제85조와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1년에 8시간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중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교육은 드물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변호하든지 가해자를 변호하든지 젠더감수성이 가장 높아야 할 사회적 집단에 속한다. 대다수의 성폭력은 폭행·협박 없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폭행·협박을 명시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 경험과 해석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가 ‘시장화’ 되어갈 때, 상대적으로 더 약자일 경우가 많은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들이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역고소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의료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변호사 교육연수에 인권·젠더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27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8년 8월 29일자, 이데일리, “‘성범죄 무죄로…피해자에 사과 마세요’ 변호사광고 금지법안 나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3. '미투 이후' 범정부 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1) 범정부협의회 대책의 실효성 강화방안

범정부협의회는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된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범정부협의회 대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 (1) 범정부협의회는 각 부처의 대책을 종합·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개별 부처 수준에서 대책이 수행되거나 여성폭력 관련 주무 부처인 여가부 중심으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쟁점에 따라 개별 법률·정책 관련 주요 부서가 달리 상정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과 예산집행이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수행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되 사업 간, 부처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성폭력근절을 위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범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반영해야 하나 담당자의 정보, 인식 수준에 따라 그 실효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책 환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재 범정부 대책들의 경우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되었는데 지방정부 역시 그 책임을 함께 하는 만큼 여성폭력 방지의 제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범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범정부협의회에 참여한 각부 부처의 예산 세부 내역과 '미투' 관련 예산 항목을 분석한 송민정(2018)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미투'와 관련된 예산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부서는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6개 부서였다. 이는 '미투예산'의 정확한 기준이나 정의에 대해 행정 부처 예산 담당자들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범정부 대책의 실행에 있어서 예산, 인력에 대한 이행점검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전 부처가 범정부적 정부대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은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중앙부처,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현재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부처로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외연은 넓어지고 있으나, 디지털성폭력,데이트폭력, 문화예술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이것이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과는 상이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어떻게 지원기관에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기존에 피해자 지원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명확히 하면서 새로 마련된 지원체계와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기존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주 전달체계로는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가 있다. 각 전달 체계들의 주요기능은 긴급·위기지원, 조사지원, 의료지원, 지속지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각각의 지원체계 간 지원기능이 중복적이고, 해바라기센터 간의 경우에도 위기형, 통합형, 아동형으로 기능이 세분화되어 피해자들이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각 체계들의 기능을 긴급지원, 조사지원, 의료지원, 지속지원으로 특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슈마다 새로운 지원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현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 (2) 여성폭력피해의 통합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여성폭력 관련법이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규모, 피해자 현황 등과 상관없이 개별법상의 피해자지원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각 개별법상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여성폭력피해 유형을 통합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유관기관 간 피해자지원 해석의 차이 개선

(1) 해바라기센터

- ① 중앙기관 차원에서 지원 범위에 대하여 통일된 피해자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② 지자체 및 지역별로 유관기관 간 모임을 통해서 지원과정에서의 지침 매뉴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논의하여 지원기관 자체적으로 소극적 판단을 배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③ 개별 지원기관은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관 자체가 피해유무의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 사례회의와 수퍼비전, 유관기관 사례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④ 본 상담일지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소는 지속지원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형 모델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조사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들이 후속지원(지속지원)을 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는 법적 근거, 지원절차 매뉴얼에 근거하여 요건을 해석한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 근 거리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면 가능성, 재피해 및 보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피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지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제정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본 법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이나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인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그 주변인들(가족 등)도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있어 소송절차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적용상에서 본 법의 제정 취지는 유지하되 지적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 ①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하는 중에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법률과정 등에서의 정보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②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피해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의 위임장과 개별 지원기관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의 내용에는 정보제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하되 개인정보 남용은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과 지원자 역량강화

1)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기능별로 분화되어있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피해자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피해자 지원기관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수립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로드맵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 또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기관이 정책변화를 직접 찾아서 파악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직접,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
- (2) 정부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자체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해석 등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역자원의 편차 중 변호사 문제는 상담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지원자의 역할로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법률상담 등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① 여성가족부차원에서 공익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단체와의 MOU를 체결하여 지원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법률지원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② 지원자가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상담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법률상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법률홈닥터 제도²⁸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③ 위와 같은 방식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 인력이 여성폭력피해자 및 지원기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해야 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도

28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현재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수혜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성폭력피해자 심리치유 등의 자원접근이 어려운 곳에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치유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심리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5) 현행 의료비 집행은 각 시도에서 지자체로 배분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거나 상담소로 배분하여 의료비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간 사용금액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비 예산 배분 시 지자체의 현황에 비추어 의료비를 배분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의료비 불용액을 낮추고, 타 지자체에서 의료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6)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모형식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매해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7)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금의 경우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는 바 지자체에서 매칭 예산 외 소요되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8) 사업예산이 기금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업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지속성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특별예산 편성 방식이 아닌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재원을 2011년부터 일반예산에서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전환하였고 2019년도에는 범죄피해자 기금의 950여억 원 중 330여억 원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 (9)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상담건수는 해를 거듭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종사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즉,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상담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자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종사자 규모 중 자원봉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담소의 업무 중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중에서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상담소 운영실적 수집 및 데이터 활용

현재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데이터는 수집 이후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각 연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처: <http://lawhomedoctor.moj.go.kr/posts/legalmorgue/view.do?nt-tilid=658#>

도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처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분석 없이 수치 보고 방식으로만 활용된다면 데이터의 양적인 증감에만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과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양적인 상담 횟수·건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향후 상담소 운영실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단순히 양적 실적 보고를 넘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질적 정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운영실적의 수집항목은 성폭력피해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인선 외(2017)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초 통계 및 시계열 통계 생산을 위해 어떤 항목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살펴볼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특정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 이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다만 통계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항목을 지나치게 증가시키거나 복잡하게 구성하면 이것 역시 일련 상담소들에 업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3) 운영실적 보고는 장기적으로는 체계적 통계 생산도 목적으로 하되, 우선 그 이전에 각 상담소에서 원활히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지 관리나 상담소 내 통계 구축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현재 상담소 운영 실적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로, 상담소마다 각 항목의 개념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심으로 평가해 간다고 할 때,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과 같은 표현보다는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등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3) 지원자 역량강화

- (1) 성폭력피해 지원자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지역별, 상담소별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① 현행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은 양성평등기금을 원천으로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예산을 나누어 쓰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만을 기준으로 41%²⁹ 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체계적인

29 2017년도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만이 참여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총 531명 중 21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교육의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역량강화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② 단기적으로는 운영비 예산에서 현행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예산³⁰을 증액하고 지원역량강화 교육비를 책하여, 소진방지 및 개인별·상담소별·권역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③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된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지원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2)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역량 차이를 줄이고, 성폭력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수퍼비전을 일상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3명의 인원으로 수퍼비전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협력하여 상담원보수과정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소들도 많다. 따라서 상담소 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상담소 개설 시에는 경력 있는 권역별 상담소와 연계하게 하여 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조력을 받는다면 지원공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성폭력피해자 지원자는 피해자의 경험을 민감하게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피해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 자괴감, 회의감 등 피해자의 피해를 내면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리외상은 지원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지원자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지원자의 소진방지, 치유를 위해서 지원자가 개인별, 집단별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지역별 상담대학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다만 지원자들의 효과적 치유를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인식을 가진 심리상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흐름, 최근의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의 특징 및 개선점, ‘미투 이후’ 피해자 지원의 변화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0년간 성폭력상담의 현황을 통해서 10년간 성폭력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원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서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어 이 인원을 제외하면 더 적은 인원이 보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0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예산을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평균 15.9%로 나타난 반면,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서는 68.2%로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미처 닿지 못하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피해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2016년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를 보면, 기소보다 불기소가 많았으며(기소 11,401명, 불기소 13,175명), 이는 많은 성폭력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사회에서 현재 피해자들의 목소리, ‘미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 ‘미투’라는 형태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 국선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가해의 변호와 관련된 변호사 시장이 확대되는 것, 유사지원기관과의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지원에 대한 해석 차이와 관련하여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미투 이후’ 정부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는 합의 및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중점적이고 반복적인, 단기적인 대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면서 피해자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연(2006),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지선 외(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19권 2호.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20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법무부.
- 여성가족부(2018),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2015), 『성폭력 피해대상별 지원 프로젝트 성인남성 성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윤자영(2018), “미투 대응 정부 정책 평가”,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
-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인선 외(2017), 『여성폭력 통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민정(2018), “2019년 예산 속의 여성”,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
- 신주호(2010), “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 『법학논문집』, 제34집 3호.
- 전기택 외(2012),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성폭력상담소(2013),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시.
-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 법무부(2010), 법무부공고 제2010-266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출처: 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11125
- 2018년 3월 22일자, 국토매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출처: <http://m.pmnews.co.kr/55984>
- 2018년 6월 25일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출처: <http://www.kwla.or.kr/sub0401/1515>
- 2018년 8월 2일자, 한국일보, “성범죄 계속 있는데...피해자 국선변호사 ‘푸대접’”, 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11695779294>
- 2018년 8월 29일자, 이데일리, ““성범죄 무죄로...피해자에 사과 마세요” 변호사광고 금지법안 나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 2018년 9월 15일, 한겨레신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희가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96.html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자료실”, 출처: <http://lawhomedoctor.moj.go.kr/posts/legalmorgue/view.do?nttlId=65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현장지원사업”, 출처: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31&mu_lang=CDIDX00022&srch_menu_nix=c64PWTP8&srch_mu_site=CDIDX0000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뉴스〉

- 2017년 11월 14일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발표 -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필수 포함,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게시”,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35
- 2017년 11월 28일자,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82
- 2018년 2월 1일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80
- 2018년 2월 23일자, “여성가족부, ‘미투운동’ 확산 계기 관계부처와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논의에 속도 - 내 주 중 관계부처 2차 회의, 금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회의개최”,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84
- 2018년 2월 27일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902
- 2018년 3월 8일자,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97
- 2018년 3월 22일자,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0
- 2018년 3월 30일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실무 지원체계 가동”,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6
- 2018년 4월 17일자, “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7
- 2018년 6월 14일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9
- 2018년 7월 3일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2
- 2018년 10월 18일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62



토론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정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권혜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 토론1_지속가능한 미투를 위하여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피해상담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연구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어쩔 미투 이전부터 이 작업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 피해자 지원이라는 대전제를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파편적으로 제기되었던 법제도 개선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대로만 된다면 반성폭력운동은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상담일지를 통해 피해상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담일지는 피해자 지원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많은 업무속에 허덕이기에 때로 밀려놓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지만 일지를 디테일하게 적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슈파이팅이 끝나면 우리의 일지가 증거로 남기 때문이다. 상담일지 분석은 어쩔 활동가들의 초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활동가들은 일지를 적을 때, 그리고 피드백할 때 여러 고민을 한다. 일지는 법정에서 혹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요청될 때 그리고 통계낼 때 유효하게 등장하며 때론 뿌듯함을, 때론 아픔을 주기도 한다. 일지는 피해자들의 삶과 우리 현장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이를 분석한 것은 반성폭력현장의 목소리를 내는데 매우 유효하다.

2018년 1월 시작된 미투운동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은 역동 그 자체였다.

피해자들의 용기있고 힘있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다. 반성폭력의 활동에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성폭력은 몇몇 운나쁜 여성들의 이야기, 혹은 흉악범 이야기속에서만 다루어졌던 성폭력이 우리 일상에 존재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는 단순히 이슈화된 사건에서 나아가 현재까지도 미투, 위드유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2017년 이전부터 대나무숲 등을 통해 미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미투대책위를 조직하고 실무를 맡아 기자회견, 캠페인, 향의방문, 토론회등을 통해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여성단체와 지역 상담소와 함께 페미니즘 단체 및 동아리, 개인 활동가, 피해당사자모임등 새로운 조직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여 성차별 끝장집회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공고한 벽을 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가 등장함을 느끼며 성평등은 바꿀 수 없는 대세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면한 실무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들, 그동안의 민주적 방식이라 통용되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등 연대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대두되었다. 피해자지원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개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 심리, 법적지원, 자조모임이 진행되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가 힘을 얻고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힘이 나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힘을 가장 많이 빠지게 한다. 개별사건지원은 우리 사회, 국가, 기관과의 싸움이다. 성폭력은 무엇이고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법적 지원과정속에서 “우리에게 국가란 없다”라는 성차별 집회의 구호에 절로 공감하게 된다. 미투 이후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무참히 목살되었던 피해자의 말과 언어들이 있다. 법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조금 더 약자인 경우엔 무고죄가 적용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폭행 · 협박 없는 성폭력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 갔다. 가서 게임을 하며 놀았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가 깬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더니 성기를 만지면서 괜찮다고 한다. 이게 뭐지? 무섭기도 하고... / 회식을 한다. 술이 오간다. 갑자기 손을 잡는다. 손에 뽀뽀를 한다. 당황스럽다. 모두가 웃고 있다. 내가 이상한가? / 남친을 만났다.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차를 탔다. 갑자기 차문을 잠그고 그가 성폭력을 했다.

- 역고소사건

유명인을 만났다. 같이 놀았다. 술이 너무 취하였다. 호텔로 (...) 강간을 하여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타지역에 혼자 놀러갔다.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 만남후 이야기도 잘 되었다. 잘 곳이 없더니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곤 성폭력을 하였다. 바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법적인 결과는 미투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도 나왔듯이 법 제정과 개정, 그리고 인식개선은 정말 시급하다. 이 부분은 계속 중요하게 작동하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법적, 심리적 지

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동(movement)’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장과 기관에서도 이러한 전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모두 다르다고 본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제도와 정책, 기관, 상담소들의 역할에 대한 섬세하고 촘촘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소의 쓸림 현상이 존재하며 피해자지원에 대한 상담소와 각 기관의 내용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적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짜기가 필요하다. 해바라기센터, 진흥원신고센터등 정부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제도화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며 미투운동이 보여준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이를 실현할 민간단체 중심의 거점센터와 지역에 맞는 기관운영 방안이다. 이는 제도화가 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제도화 개념 또한 바뀌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서울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차이와 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지원의 방향과 제도, 내용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꼭 반영되길 바란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미투운동이라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상담 분석을 통해 현실을 드러다 볼 때 더 나은 지원 방향과 우리의 활동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변화가 없을 때 미투는 다시 수면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씩 실현할 때 가능하다.

□ 토론2_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상담일지 분석의 의미: '미투' 효과와 말해지지 않은 것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1.9%¹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가 통계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턱 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대표성 있는 표집에 기반해 있기는 하지만 피해 발생 및 대응의 과정, 피해자의 위치, 경험들을 결합태로서 보여주지 못하며 '미투'와 같은 특정 시기 사회 변화의 영향과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 연구의 자료가 된 상담일지는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방식, 그들이 느끼는 혼란과 변화, 피해를 발화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미투' 직후 시기의 상담 사례에 집중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가 '미투'를 이해하는 일각의 방식과 같이 피해사실을 '폭로'하거나 국가 기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 지속되어 온 여성들의 발화를 통해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등이 상호 교차하여 구성하는 현실로서 피해자의 위치), 가족, 직장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대한 우려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가해자의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등은 피해에 대한 발화 그 자체는 물론 피해에 대한 자기 해석과 규정, 언어화를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말한다는 것은 혼란, 무력감, 인간에 대한 불신, 나아가 특정한 언어로 분류되고 명명되지 못하고 남게 되는 개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 즉 피해를 사회적 고통으로서 함께 해석하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상담 사례들은 '미투'를 통해 혼란스럽지만 이 해석의 과정을 재개했다. '미투', 나아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는 에너지가 가해자(남성) 처벌, 피해자(여성) 보호라는 법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9쪽.

과 정책의 프레임을 넘어 집중되어야 하는 영역은 바로 이 해석의 과정이다.

■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의미

물론 처벌은 여전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말하기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이뤄졌지만 이와 달리 가해자는 일상 생활과 지위를 유지한다. 부정의한 상황, 그 법적 공백에 대한 분노는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것을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지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수사의 개시조차 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화로 인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역고소의 위협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현재의 협박한 폭행, 협박, 위력 해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피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위력,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No means No’가 아니라 ‘Yes means Yes’의 측면, 즉 적극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의 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루밍이나 장애 상태, 위력을 이용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Yes’가 진지한 동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보다 정확히는 법 해석의 과정이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문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다. 예컨대 법은 피해자를 심리학, 정신의학적으로 장애나 그루밍의 상태가 지속된 ‘존재’로 인정되는 한에서 그와 같은 행위 수단이 행사되었음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 가해자와 연루되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는 잘못된 상황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도 했다는 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하여 합리적 선택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성에게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적 판단의 논거 중 하나로서 작동하게 된다. 즉, 피해자가 평소 정상적인 판단 및 행위능력을 상실한 존재였다는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위력 행사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행위능력의 상실을 기초로 한 무기력한 피해자의 전형, 피해자다움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작동하는 한 폭행, 협박, 위력이 ‘진지한 동의 없이’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법 해석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피해자의 말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공감을 보내야 한다는 시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에서 그것이 왜, 어떻게 경험 되었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상담일지를 펼쳐보인 이유 역시 그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현행 법 체계에서 갖는 의미 역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비동의 그리고 간음을 성폭력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되,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후자의 것들에 더 큰 법정형을 부과하는 형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가, 강간과 간음, 나아가 간음과 추

행을 구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형사법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정 형은 성기 삽입 중심(강간)·유사강간·추행 및 간음)으로 서열화 되어 있고 강간과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간음을 구별하고 있다.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여지를 인정했던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기억하자. 과연 법이 강간과 간음, 폭행 및 협박과 위력을 구분함으로써 누구의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 즉 ‘적극적 동의’를 중심으로 성폭력 체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벌성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법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간 많은 논의들이 특정 사건과 이에 결부된 법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 노력들, 상이한 대응들이 착종된 결과 만들어진 현행 법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의 구성요건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마땅한 것인지, 그것은 분절된 구성요건과 이에 기반한 사실인정의 단계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역고소와 학교

이 연구에서는 역고소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는 물론 신고에 이르지 않은 여성들의 신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는 반성폭력운동 자체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혐오’ 표현으로서 텍스트나 ‘음란물’에 대한 규제에는 소극적이되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발화에 대한 규제에는 묵인하는 법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가 남성의 것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건 및 인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윤리규정 및 제재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본 연구의 제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고소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신고 사실의 진위를 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위치에 서도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반해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의 위치는 마치 법 앞에 대등한 피고인·들’의 위치로 전환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의 효과는 무화되어 버린다. 스스로를 ‘피해자화’하여 억울함을 입증하려 하고, 피해자의 사법적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보복하려는 수단으로서 역고소의 활용은 그 자체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불안을 반영한다. 역고소가 그와 같은 항변 수단으로서 남용되는 것은 무고죄의 높은 불기소율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이들 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리한 ‘꽃뱀’ 담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고소 통계를 생산, 공표하는 작업 역시 유용할 수 있다. 무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입건의 근거 없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과조치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수사 개시의 요건과 한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역고소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넘어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처벌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리고 성폭력에 대한 발화가 갖는 의미를 탈정치화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하고 지지하였던 이들은 명예훼손, 심지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다. 피해자는 그 미안함에 사건 진행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를 목도한 이들은 연대에 주저하게 된다. 이제 명예훼손을 우려한 피해자는 구체적 사실이나 맥락을 드러내지 못한 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을 본 이들은 그 피해가 지시하는 문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도리 없이 지지를 보낸다. 이때 ‘공론화’ 되는 것은 피해 맥락이 아니라 피해 주장 그 자체가 된다.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20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쉽게 발생하는데, 가해자들은 이른 나이에 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부터 배우게 되며 이들은 사법 권력이 진실을 판단할 유일한 기관이라 주장한다. 조사 기관의 권위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듣고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 조차 교육, 피해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변호사를 동석한 유사 사법 절차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내 인권센터 및 상담소의 위상, 역할,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역시 ‘미투’의 과제로 남아 있다.

□ 토론3_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피해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1) '18년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 운동' 일명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문화예술, 방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났고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매우 낮습니다. 트라우마 등 큰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가해자 보복,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겪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 등 2차 피해도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경험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를 기대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보이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또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2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일부 수사관들의 잘못된 인식도 피해자를 더 고통 받게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성인지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 '18년 11월에 외국 문헌(美 하버드대학교 메디컬 센터 연구 자료, 영국 법무부 등)과 현장 경찰관, 해바라기센터 조사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위 모델은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2) 개방형 질문 등 선진 조사기법의 적용, 3) 실태 조사를 통한 2차 피해 사례 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8개 경찰서에서 위 표준모델을 시범 적용하였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관에게 공감·배려 받는 느낌이었던다는 반응으로 올해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 2) 피해 조사에 앞서 여청수사경찰관이 ‘문답 형식 안내고지서’를 활용하여 가명조사, 국선변호인 선임 등 형사절차상 권리와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3) 성폭력 등 피해 여성이 편안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경찰관서에 여청수사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였고 여성폭력 사건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아예 분리하는 사무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4)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성폭력 범죄 경찰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동일인을 피해자 및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심리적 위축이 염려되고 민간전문 단체의 의견에 따라 수사 기능을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5) 순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143명, 팀장 여경)과 사이버성폭력수사팀(91명)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상 성폭력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봉착하는 매순간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조직과 예산반영으로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 뇌에 미치는 영향 - 수사관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출처 : Sexual Assault and the Brain(Jim Hopper, Pd. D., 美 Harvard Medical Center, '18.1월)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

- ◇ 성폭력 피해자는 오래 전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 ◇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상기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감정 상태로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증상과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스스로 충동적이고 위험한 성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 ◇ 피해자는 경찰의 피해조사 자체를 지금껏 자신이 지켜왔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피해사실을 회상하기 어려워하고 특히 불쾌했거나 수치심을 느꼈던 부분은 더욱 힘들어 한다. 또한 피해 진술 과정에서 성폭행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느낄 수 있다.
- ◇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 통제, 신뢰, 이해 그리고 공감이다. 이를 위해 조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먼저 피해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듯 먼저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조사관의 질문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관이 이야기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 ◇ 또한 물을 마시고 싶은지, 언제 휴식시간을 갖고 싶은지, 어디에 앉고 싶은지 등 단순한 사항이라도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들이 공감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

- 성폭력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성폭력 상황에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다 -

- ◇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의식이 있는 한(심지어 취해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뇌의 방어회로가 작동하고 전전두엽 피질은 손상된다.
- ◇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요한 정보(예를 들면, 비명을 지르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
- ◇ 위와 같은 뇌의 작용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① 차량 불빛 앞의 노루처럼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지만, 도망이나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나는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다. 정말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 ② 도망이나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하면, 공포로 인한 마비가 온다. 즉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울 수도 없게 되고, 근육이 굳어버린다. 또는 어지럽거나 축 늘어진다. 일부 피해자는 ‘졸린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③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끼거나, 의식이 감정과 신체 감각에서 분리되고, 성행위에 가담하는 등 ‘자동으로 조정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해리)
 - ④ 착하고 체면을 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사회화된 여성은 남성의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 있을 때 “이제 집에 가야 되요”, “당신 여자친구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습관 반사)

⇒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해서는 안되며, 성폭행이라는 트라우마적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는 왜 불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 경찰관인 당신도 총격전을 경험했다면, 이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겠는가?
 파편적, 불완전한 기억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 현상이다 –

- ◇ 성폭력 상황에서는 뇌의 해마·방어회로가 활성화 되어 '생존'에 필요한 사항은 잘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파편적으로 기억한다.

상황		뇌의 작용	기억에 미치는 영향
평상시		전전두엽 피질	합리적 사고·선택
성폭력 상황	성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순간	해마	직전, 직후의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게 기억함(주변 정보, 시간 순서 등 포함)
	그 이후	방어 회로 - 반사· 습관 반응	생존에 필요한 사항들에만 집중 주변 정보, 시간 순서 등 기억 못함 파편적으로 기억

- ◇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방어회로가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도망가기 위해 문에 집중하면서 문 밖의 테이블이나 식물에 대해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수사과정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 상태나 범죄 장소를 입증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 방어회로가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억은 떠올리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이 그렇다. 이러한 사항은 수사의 중심 초점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 ◇ 주변 정보(예를 들면, 방 배치도)와 시간 순서 정보(예를 들면, 성적 행위가 일어난 순서)는 종종 잘 기억하지 못한다.
- ◇ 그러나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움이 생긴 순간에서 있었던 일들은 '해마'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향상되면서 훨씬 잘 기억한다.

- ⇒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해서는 안되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토론4_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토론5_

권혜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발행일 2019년 1월 29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발행인 이미경

편집 김보화 · 장주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366-24), 3층 (우)04072

전화 02-338-2829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메일 research@sisters.or.kr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bebe@naver.com)



본 자료집에 표기된 사례의 문구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맥락이 삭제된 채 사례만 인용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경험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02-338-2829, research@sisters.or.kr)